

특정감사

감사결과보고서

- 사·도립대학(교) 운영실태 -

2012. 3.

감사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고발사항	
1-1. 편입생 선발을 위한 전공기초시험 채점 업무 부당 처리	2
1-2. 편입생 선발을 위한 전공기초시험 운영 부적정	8
2. 특별전형 입학사정 업무 부당 처리	12
3. 교수 공개채용 업무 부당 처리	16
4. 교수 채용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업무 부당 처리	20
5. 재학생 성적 부여 등 학사 관리 부적정	25
6. 재학생 성적 부여 등 학사 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41
7-1. 학과 육성사업비 횡령 및 사업비 인장관리 태만	59
7-2. 중점학과 육성사업비 등 횡령	65
7-3. 중점학과 육성사업비 등 정산 부적정	68
8.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업무 부당 처리	71
9. 군포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 연구비 부당 편취	74
10. 학사상근일용직 채용업무 부적정	77
11.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운용 및 서류심사 업무 부적정	80

12.	재학생 성적 부여 등 학사 운영 부적정	84
13.	재학생 성적 부여 등 학사 운영 부적정	86
14.	재학생 성적 부여 등 학사 관리 부적정	88
15.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부적정	91
16.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부적정	93
17.	e-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입찰자격 부당 제한 및 원고료 지급 부적정	96
18.	교수 승진심사 시 연구실적 중복 사용 부적정	101
19.	교수 승진심사 시 연구실적 중복 사용 부적정	104
20.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 관리 부적정	112
21.	교수 특별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115
22.	교수 신규채용 연구실적 심사기준 운용 부적정	117
23.	교수 국외여행 복무관리 부적정	121
24.	교수 특별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124
25.	청소년수련원 건립·운영사업 추진 부적정	127
26.	산학협력단의 연구 간접비 관리업무 불철저	131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목적

9개 시·도립대학(교)는 지자체 직속기관인데도 교육분야라는 사유로 기관운영감사에서 제외되어 감사사각 지대로 방치된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감사는 시·도립대학(교) 운영실태를 상호 비교·분석하고 조직·인사, 학사운영, 재정운영 등 대학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대학운영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 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등 9개 시·도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인사·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교수(직원) 채용, 승진, 복무, 조직 및 인력 운영 등을, 학사관리 측면에서는 학생 특별전형, 편입학, 출결사항, 시험관리 및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등을, 재정운영 측면에서는 연구비 관리, 용역계약 및 공사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하였다.

4. 감사 기간 및 인원

2011. 10. 17.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20일간 20명(차출 7명 포함)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2012. 3. 15.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편입생 선발을 위한 전공기초시험 채점 업무 부당 처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

징계 대상자 ①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학부
부교수 갑
(전 ◇◇대학 □□학부 조교수)

②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학부
조교수 을

징 계 종 류

징 계 사유

위 사람들 중 갑은 2008. 2. 1.부터 2011. 2. 28.까지 ◇◇대학 □□학부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2010학년도 편입생 선발을 위한 □□학부 전공기초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 업무를 처리하였고, 을은 2008. 3. 1.부터 2011. 12. 7. 현재까지 ◎◎대학 ♣♣학부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2011학년도 편입생 선발을 위한 ♣♣학부 전공기초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 업무를 처리하였다.

“2010·2011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편입학 입시안내”[입학관리과-4311호(2009. 12. 11.), 입학관리과-5217호(2010. 12. 10.)] 및 “2010·2011학년도 편입학 입시안내 확정보고”[입학관리과-4453호(2009. 12. 22.), 입학관리과-5285호(2010. 12. 14.)]에 따르면 예술체육대학(음악학과, 생활체육정보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등) 이외의 ◎◎대학 등

6개 대학은 공인영어성적 50%와 전공기초시험 성적 50%를 합산한 총점순위에 따라 성적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0·2011학년도 일반편입학 전공기초시험 실시계획”[입학관리과-306호(2010. 1. 20.), 입학관리과-321호(2011. 1. 19.), 이하 “전공기초시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따르면 편입생을 선발하면서 문제 출제, 고사장 감독, 채점 등에 만전을 기하여 전공기초시험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되어 있고, 전공기초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이 작성한 서약서에 따르면 편입학전형의 입학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전공기초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으로 선정된 위 사람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채점 업무를 수행하여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하거나 정답을 오답으로 처리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1. 갑의 경우

위 사람은 2010. 1. 22. 2010학년도 편입생 선발을 위한 □□학부 전공기초시험 출제 및 채점 업무를 처리하면서 6번 문항부터 14번 문항까지를 출제하였고, 같은 해 1. 25.경 응시생들이 제출한 답안에 대한 채점을 하여 응시생들의 전공기초시험 점수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확정된 전공기초시험 점수와 영어점수의 합계 상위순으로 최종합격자 10명이 선발되도록 하였다.

한편 전공기초시험 실시계획에 따르면 응시생이 전공기초시험에서 평균 40점 미만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영어시험 성적과는 관계없이 과락으로 불합격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위 사람은 자신이 11번 문항을 직접 출제하여 11번 문항에 대한 정답이 통계용어인 “등간척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응시생 ▲▲▲이 위 11번 문항에 대한 답을 “등목적도”로 기재하였는데 이를 첫 글자인 “등”만 보고 채점을 하였다는 타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더욱이 위 사람은 응시생 ☆☆☆가 위 11번 문항에 대한 답을 “등가척도”로 잘못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는 오답처리 하였으면서도 ▲▲▲ 응시생의 오답만 부당하게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별표] “2010·2011학년도 ☞☞학부·□□학부 전공기초시험 부당 채점 결과”와 같이 ▲▲▲ 응시생은 위 11번 문항이 오답 처리되었을 경우 전공기초시험 점수가 35점이 되어 과락¹⁾으로 불합격 처리되었어야 하는데도 위 11번 문항이 정답 처리되어 40점을 얻어 과락을 면하고 최종합격 처리²⁾되었다.

2. 을의 경우

위 사람은 2011. 1. 21. 2011학년도 편입생 선발을 위한 ☞☞학부 전공기초 시험 출제 및 채점 업무를 처리하면서 1번 문항부터 20번 문항까지를, 같은 학부 부교수 □□□는 21번 문항부터 40번 문항까지를 각각 출제하였으며, 같은 해 1. 25.경 응시생들의 답안에 대해 각각 자신이 출제한 문항에 대한 채점을 하고 채점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채점한 답안을 교체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응시생들의 전공기초시험 점수를 최종 확정하였고, 확정된 전공기초시험 점수와 영어점수의 합계 상위순으로 최종합격자 13명이 선발되도록 하였다.

1) 채점위원 2명의 평균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2) 2010학년도 □□학부 편입생 선발의 경우 당초 24명을 선발하려 하였으나 과락 처리된 응시생이 많아 최종합격은 10명에 불과하였으므로 ▲▲▲ 응시생이 과락으로 불합격하였어도 정당하게 합격되었어야 할 응시생은 없음

한편 위 사람은 자신이 직접 11번 문항을 출제하였기 때문에 11번 문항의 정답이 “ $Q_1=12-\frac{1}{2}Q_2$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응시생 ※※※이 위 11번 문항의 답을 “ $Q_1=24-2P$ ”로 기재하였는데 정답 처리하였다.

더욱이 위 사람은 □□□가 출제·채점한 21번 문항부터 40번 문항까지 채점에 오류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면서 ※※※을 포함한 7명의 응시생이 31번 문항의 답을 정답 “869.6”이 아닌 “870”으로 오답을 기재한 데에 대해서 □□□ 교수가 부당하게 정답 처리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이 최종 합격 처리되었지만 [별표] “2010·2011학년도 ☞☞학부·□□학부 전공기초시험 부당 채점 결과”와 같이 ※※※의 11·31번 문항이 오답 처리되었다면 불합격 처리된 응시생 ◎◎◎의 총점과 같게 되며, 이 경우 ※※※은 전적대학성적이 낮아 불합격 처리되었어야 하는데 최종 합격 처리된 반면 ◎◎◎은 합격처리 되었어야 하는데도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위 11번 문항은 12·13·14번 문항과 연결이 되는 문제로서 11번 문항의 정답을 제대로 구하지 못할 경우 12·13·14번 문항의 정답을 구할 수 없으므로 위 ※※※ 응시생은 위 11번 문항의 답을 제대로 구하고도 “ Q_2 ”를 “ Q_1 ”으로 표기하고 “ Q_1 ”을 “P”로 표기하는 실수³⁾를 한 것이기 때문에

3) 을이 주장하는 ※※※의 답에 대한 정답처리 과정: “ $Q_1=12-\frac{1}{2}Q_2$ ”(정답) \Rightarrow “ $Q_2=24-2Q_1$ ”(정답 $\times 2$) \Rightarrow “ $Q_1=24-2P$ ”[※※※의 답, (정답 $\times 2$)에서 “ Q_2 ”를 “ Q_1 ”으로 “ Q_1 ”을 “P”로 기재]

단순 표기 실수에 대해서는 정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채점 방식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전공기초시험에 응시한 59명 중 ※※※ 이외에 12명의 응시생이 12·13·14번 문항의 정답을 제대로 구하고도 위 11번 문항의 정답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였고, 위 ※※※과 같이 위 11번 문항의 답을 “24-2P”라고 기재한 응시생 ◇◇◇4)의 답은 오답 처리하였으므로 위 사람의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위 사람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4) ◇◇◇의 경우 최초 불합격 처리되었으나 ※※※ 응시생 이외 다른 응시생의 등록포기로 추가 합격되었고, ◎◎◎은 최종 불합격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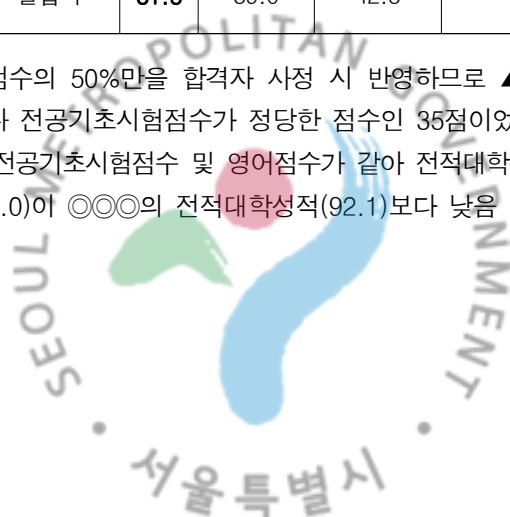
[별표]

2010-2011학년도 **공공학부·□□학부** 전공기초시험 부당채점 결과

응시내역	성명	전적대학 성적	편입학전형 결과				부당채점에 의해 부여된 점수 (B)	정당총점 (C=A-B)	정당총점에 따른 전형결과
			합격여부	점수					
				총점 (A)	영어점수	전공기초 시험점수			
2010학년도 □□학부 편입	▲▲▲	95.8	합격	64.5	44.5	20.0	2.5	62.0	불합격 ^{주1}
2011학년도 공공학부 편입	※※※	91.0	합격	84.0	39.0	45.0	2.5	81.5	불합격 ^{주2}
	○○○	92.1	불합격	81.5	39.0	42.5	0	81.5	합격

- 주: 1. 전공기초시험점수는 획득점수의 50%만을 합격자 사정 시 반영하므로 ▲▲▲이 전공기초시험 점수를 40점 획득하여 최종합격하였으나 전공기초시험점수가 정당한 점수인 35점이었다면 과락으로 불합격
2. ※※※과 ○○○은 총점, 전공기초시험점수 및 영어점수가 같아 전적대학성적에 의해 합격여부가 결정되는데 ※※※의 전적대학성적(91.0)이 ○○○의 전적대학성적(92.1)보다 낮음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의요구·통보

제 목 편입생 선발을 위한 전공기초시험 운영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에서 2010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여 ☞☞학부에서 33명을 선발하는 등 총 253명의 편입생을 선발하면서 학부(과)별로 각각 출제하고 채점한 전공기초시험의 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을 합산한 총점순위에 따라 성적이 높은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였다.

“2010·2011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편입학 입시안내” 및 “2010·2011학년도 편입학 입시안내 확정보고”에 따르면 ♣♣♣♣대학(☆☆학과, ★★★★★★학과, ○○○○○○○○○학과 등) 이외의 ◎◎대학 등 6개 대학은 공인영어성적 50%와 전공기초시험 성적 50%를 합산¹⁾한 총점순위에 따라 성적이 높은 순으로 편입생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0·2011학년도 일반편입학 전공기초시험 실시계획”에 따르면 편입 합격자를 선발하면서 문제 출제, 고사장 감독, 채점 등에 만전을 기하여 전공기초시험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되어 있고, 위 전공기초시험 출제위원·채점위원·감독위원이 작성한 서약서에 따르면 편입학전형의 입학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5년제인 건축학전공은 공인영어성적 50%, 전공기초시험 성적 20% 및 심층면접 성적 30%를 합산

한편 위 전공기초시험은 OMR카드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자동 채점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과 달리 채점위원이 제출된 주관식 답안을 보고 개별적으로 채점하는 방식이며 이에 대한 제3자의 객관적인 검증절차²⁾도 없기 때문에 채점과정에서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하거나 정답을 오답으로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편입생이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위 전공기초시험의 채점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은 물론 채점위원이 채점 업무를 투명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학부(과)별 교수 2명을 위 전공기초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선정하고 채점 업무까지 직접 하도록 하고는 채점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객관적인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 2010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2학년도에 걸쳐 ♣♣학부와 □□학부 편입생 선발을 위한 전공기초시험 채점 업무를 하면서 채점위원 2명 중 1명만이 채점³⁾을 하거나 채점위원 2명 모두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⁴⁾함으로써 최종합격자가 뒤바뀌거나 불합격자가 최종합격자가 되는 등의 사례가 [표]와 같이 4건 발생하였고,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서울시립대학교의 신입생 선발 논술고사의 경우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구성하고 있고, 채점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채점조정위원이 채점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

3) 2011학년도 ♣♣학부 편입 전공기초시험 채점 과정에서 채점위원 2명이 공동으로 채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각자 총 문항의 절반인 10문항씩을 출제·채점하는 등 공동 채점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같은 학년도 □□학부 편입 전공기초시험 채점 과정에서는 채점위원 1명이 1번부터 5번 문제까지를 출제·채점하고 나머지 6번부터 14번까지의 문제를 다른 채점위원 1명이 출제·채점하는 등 공동 채점 업무는 소홀

4) 2010학년도 □□학부 편입 전공기초시험 채점 과정에서 채점위원 2명이 공동으로 채점을 하고도 2명 모두가 오답인 “등목척도”를 첫 글자인 “등”자만 보고 정답인 “등간척도”인 것으로 착각하여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

[표] 2010·2011학년도 **♣♣학부·□□학부** 전공기초시험 부당 채점 결과

응시내역	채점 교수	성명	편입학 전형 결과			부당채점으로 부여된 점수 (B)	정당 총점 (C=A-B)	정당 총점에 따른 전형결과	
			합격 여부	점수					
				총점 (A)	영어점수				전공기초 시험점수
2010학년도 ♣♣학부 편입	▶▶▶	○○○	합격	77.5	48.5	29.0	1.0	76.5	최초 불합격 ^{주1}
	△△△	♣♣♣	합격 ^{주2} (최초불합격)	76.5	33.5	43.0	0	76.5	합격
2010학년도 □□학부 편입	▲▲▲	□□□	합격	64.5	44.5	20.0	2.5	62.0	불합격 ^{주3}
	◇◇◇								
2011학년도 ♣♣학부 편입	◆◆◆	○○○	합격	84.0	39.0	45.0	2.5	81.5	불합격 ^{주4}
	♡♡♡	▽▽▽	불합격	81.5	39.0	42.5	0	81.5	합격
2011학년도 □□학부 편입	◆◆◆	◇◇◇	합격	68.0	43.0	25.0	5.0	63.0	불합격
	☆☆☆	※※※	불합격	64.0	44.0	20.0	0	64.0	합격

- 주: 1. ○○○과 ♣♣♣의 정당총점이 같아 전공기초점수에 따라 합격여부가 결정되는데 ♣♣♣의 전공기초시험점수(43.0)가 ○○○(28.0)보다 우수
2. ○○○로 인해 최초 불합격되었으나 ○○○ 이외 다른 최초 합격자의 등록포기로 추가합격
3. 전공기초시험점수는 획득점수의 50%만을 합격자 사정시 반영하므로 □□□은 전공기초시험 점수를 40점 획득하여 최종합격하였으나 전공기초시험점수가 정당한 점수인 35점이었다면 과락(40점미만)으로 불합격
4. ○○○과 ▽▽▽은 총점, 전공기초시험점수 및 영어점수가 같아 전적대학성적에 의해 합격여부가 결정되는데 ○○○(91.0)의 전적대학성적보다 ▽▽▽(92.1)이 우수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사례 1] 2010학년도 ♣♣학부(경쟁률 6.05:1) 전공기초시험 채점

- 25번 문항의 정답은 “다”인데 ○○○의 답인 “가”를 정답처리
- 그 결과 최초 불합격된 ♣♣♣과 ○○○의 당락이 뒤바뀌는 결과 초래
(다만, ♣♣♣은 ○○○ 이외 다른 최초 합격자의 등록 포기로 추가합격)
- ※ 특히, ♣♣♣의 25번 문항에 대한 답 “가”는 ○○○과 달리 오답처리

[사례 2] 2010학년도 □□학부 편입(경쟁률 7.29:1) 전공기초시험 채점

- 11번 문항의 정답은 “등간척도”였는데 □□□의 답인 “등목척도”를 정답처리
- 그 결과 과락으로 불합격되었어야 할 위 □□□이 최종합격

[사례 3] 2011학년도 ♣♣학부 편입(경쟁률 11.85:1) 전공기초시험 채점

- 11번 문항의 정답은 “ $Q_1 = 12 - \frac{1}{2} Q_2$ ”였는데 ○○○의 답인 “ $Q_1 = 24 - 2P$ ”를 정답처리하고
- 31번 문항의 정답은 “869.6”이었는데 위 ○○○을 포함 총 7명의 답인 “870”을 정답처리
- 최종 불합격된 ▽▽▽과 위 ○○○의 당락이 뒤바뀌는 결과 초래

[사례 4] 2011학년도 □□학부 편입(경쟁률 12.55:1) 전공기초시험 채점

- 4번 문항의 정답은 “0.16”이었는데 ◇◇◇의 답인 “0.2”를 정답처리
- 최종 불합격된 ※※※과 ◇◇◇의 당락이 뒤바뀌는 결과 초래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통보] 편입생 선발을 위한 전공기초시험의 채점위원이 채점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시험 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주의]

- ① 앞으로 편입생 선발을 위한 전공기초시험 채점 과정에서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며
- ② 관련자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특별전형 입학사정 업무 부당 처리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충북도립대학

징계 대상자 충북도립대학 ○●○과
과장 부교수 ○○○

징 계 종 류

징 계 사유

위 사람은 2010. 2. 1.부터 2011. 11. 11. 현재까지 위 대학 ○●○과장의 직위에서 입학 사정 등 교무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대학의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이하 “모집요강”이라 한다)에 따르면 특별전형은 특별한 지원자격을 조건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별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중 ‘담임교사 및 본교 교직원 추천자’의 경우 담임교사 또는 본교 교직원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담임교사 및 본교 교직원 추천자’ 특별전형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가 제출한 ‘담임교사 추천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입학원서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정시 1차 모집 마감일인 2011. 1. 14. ○●○과 소속의 위

특별전형 담당자 ◆◆◆으로부터 [표 1]과 같이 ◇◇◇◇◇◇학과(이하 “◇◇과”라 한다)와 ♥♥♥♥♥♥♥♥학과(이하 “♥♥과”라 한다)의 특별전형 지원자가 각각 6명(모집정원 9명)과 7명(모집정원 20명)으로 모집정원에 미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일반전형 지원자의 입학원서를 특별전형으로 변경하여 미달학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표 1] 2011학년도 ◇◇과와 ♥♥과와의 정시 1차 모집 지원 현황 보고

(단위: 명)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집정원	지원자	경쟁률	비고	모집정원	지원자	경쟁률	비고
◇◇과	7	73	10.42 : 1		9	6	0.66 : 1	미달
♥♥과	16	112	6.93 : 1		20	7	0.40 : 1	미달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사람의 지시를 받은 ◆◆◆은 일반전형으로 ◇◇과와 ♥♥과에 각각 지원한 ◎◎◎ 등 5명과 ♣♣♣ 등 5명의 입학원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시원서 전형구분상의 ‘일반전형’란에 표시된 ‘○’ 표시를 선을 그어 삭제하고, ‘특별전형’ 중 ‘독자기준’란에 ‘√’ 표시를 한 후 자필로 ‘교직원 추천’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입학원서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교직원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교직원 추천서’ 등도 제출하지 않은 ◎◎◎ 등 10명이 [표 2]와 같이 특별전형의 서류전형 결과 모두 합격하였고, 그 중 면접에 불참한 ◇◇◇와 □□□를 제외한 8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한편 위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사정 기준⁵⁾에 따라 특별전형의 미달

5) 담당자 ◆◆◆은 인터넷으로 접수한 입학원서의 경우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곤란한 데 비해 창구에서 서면으로 접수한 입학원서의 경우 변경이 용이하여 창구에서 접수한 입학원서를 대상으로 변경 대상을 고르던 중 ◎◎◎ 등 9명은 본인이 임의로 선택하였고 ♣♣♣의 경우 보호자가 ◆◆◆에게 전화로 ♥♥과 ‘특별전형’의 지원 현황을 물어본 후 ♥♥과 ‘특별전형’이 미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입학원서 변경을 요청하여 변경대상에 포함하였다고 진술함

인원을 일반전형에서 추가 선발할 경우 위 사람들의 합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diamond\diamond$ 과와 $\heartsuit\heartsuit$ 과의 일반전형 합격선⁷⁾은 735.0점과 710점이 되는 데 비해 특별전형으로 $\diamond\diamond$ 과에 합격한 $\circ\circ\circ$ 과 $\heartsuit\heartsuit$ 에 합격한 $\blacklozenge\blacklozenge\blacklozenge$ 의 점수를 일반전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734.6점, 685점이 되어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합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른 한편 일반전형으로 $\diamond\diamond$ 과에 지원한 $\infty\infty\infty$ 와 $\nabla\nabla\nabla$ 은 $\circ\circ\circ$ 보다 높은 740점과 735점을 받고도 불합격 처리되고, $\heartsuit\heartsuit$ 에 지원한 $\star\star\star$ 등도 $\blacklozenge\blacklozenge$ 보다 높은 710점을 받고도 불합격 처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2] 일반전형에서 특별전형으로 변경한 지원자의 전형 최종결과

과명	지원자	출신학교	특별전형 ^{주)} 결과			일반전형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결과	
$\diamond\diamond$ 과	$\circ\circ\circ$	xx여자고등학교	합격	참석	합격	740.6
	$\circ\circ\circ$	"	합격	불참	불합격	-
	$\circ\circ\circ$	"	합격	참석	합격	745
	$\circ\circ\circ$	"	합격	참석	합격	734.6
	$\circ\circ\circ$	"	합격	불참	불합격	-
$\heartsuit\heartsuit$ 과	$\circ\circ\circ$	$\square\square$ 고등학교	합격	면접전형 없음	합격	730
	$\circ\circ\circ$	xx여자고등학교	합격		합격	740
	$\circ\circ\circ$	"	합격		합격	735
	$\circ\circ\circ$	"	합격		합격	720
	$\circ\circ\circ$	"	합격		합격	685

(환산방법)
학생부성적 400점 + 수능성적 400점 + 면접점수 20점 = 총 820점

(환산방법)
학생부성적 400점 + 수능성적 400점 = 총 800점

주: 특별전형 성적반영 비율은 $\diamond\diamond$ 과의 경우 420점(학생부성적 400점+면접점수 20점)이며 $\heartsuit\heartsuit$ 과의 경우 400점(학생부성적 400점)이나 지원자가 미달되어 면접 불참자 외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모두 합격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diamond\diamond$ 과와 $\heartsuit\heartsuit$ 과의 특별전형이 미달되어 미달과가 발생하면 학교 이미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미달과를 없애려고 일반전형 지원자 중 일부를 특별전형으로 변경하였다고 변명하나 [표 3]과 같이 \heartsuit

6) 위 대학 모집요강의 합격자 사정 기준에 따르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미달 인원이 발생하면 전형 간 전환하여 충원 합격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7) 특별전형 미달 인원($\diamond\diamond$ 과 3명, $\heartsuit\heartsuit$ 과 5명)을 일반전형에서 추가 모집하였다고 가정할 때 합격선(컷라인)

♡ㅍ에서 특별전형 지원자 8명이 미달되자 위 대학 모집요강의 합격자 사정기준에 따라 일반전형 지원자 중에서 미달인원을 추가 모집한 점을 고려할 때 위 사람의 변명⁸⁾은 그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표 3] 2011학년도 ♠♠과와 ♡♡ㅍ의 정시 1차 모집 최종 지원 현황 및 전형 결과

(단위: 명, 점)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모집정원	지원자	경쟁률	합격자	합격선	모집정원	지원자	경쟁률	합격자	비고
♠♠과	7	68	9.71 : 1	7	744.6	9	11	1.22 : 1	9 ^{주1}	
♡♡ㅍ	16	107	6.68 : 1	24 ^{주2}	710	20	12	0.6 : 1	12	8명 미달

주1: 서류전형 합격자 11명 중 2명이 면접에 불참하여 9명이 최종합격

주2: 일반전형 모집정원은 16명이나 특별전형에서 미달된 8명을 일반전형에서 추가 모집하여 24명 최종합격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충북도립대학 총장은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8) 당초 위 사람은 문답과정에서 담당자 ◆◆◆이 xx여자고등학교 진학 담당교사 ○○○으로부터 ◎◎◎ 등 9명(당시 xx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의 입학원서를 특별전형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입학원서를 변경한 것이고, 본인은 ◆◆◆으로부터 사후에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입학원서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본인이 ◆◆◆에게 입학원서를 변경하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을 인정함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교수 공개채용 업무 부당 처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

징계 대상자 ① 서울시립대학교 □□□□학과
교수 갑
(전 ××처장)

② 서울시립대학교 ◇◇학과
부교수 을
(전 ◇◇전문대학원 ××과장)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갑은 2009. 3. 1.부터 2011. 4. 30.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처장의 직위에서 교수채용 등 교무업무, 학사행정, 입학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을은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 ◇◇전문대학원 ●●과장의 직위에서 신규교수 채용 등 대학원 관련 일반업무를 수행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규임용규정」 제3조 제5호 및 「2010년 상반기 교수초빙 공고」(2009. 10. 14., 제2009-214호)에 따르면 ▲▲▲ 분야 교수 공개채용 지원 자격은 학력에 있어서는 ‘접수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고, 연구실적에 있어서는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006. 11. 6. ~ 2009. 11. 5.) 발표한 연구실

적이 200% 이상인 자'이며 학력 및 연구실적 기준 미충족자가 지원한 경우에는 결격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 분야 교수 공개채용의 경우 접수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거나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연구실적이 200% 이상인 자가 지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결격처리하여야 한다.

1. 갑의 경우

위 사람은 2009. 11. 4. 당시 2010학년도 상반기 신규교수 초빙 관련 지원서류 접수업무 총괄실무자 □□□로부터 '접수일 현재 박사학위가 없는 자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접수일 현재 박사학위가 없는 자가 지원한 경우에는 결격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¹⁾ '지원 가능하다'라고 부당하게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1. 6. "접수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도 아니고,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연구실적이 200% 이상이 아닌 자'로서 학력 및 연구실적 기준 미충족자인 ▲▲▲ 분야 교수 지원자 ◎◎◎의 지원서류가 접수되었다.

그 결과 기초심사(11. 9.), 연구실적심사(11. 10.), 공개발표심사(11. 27.), 면접심사(12. 3.) 및 대학인사위원회 심의(12. 30.) 등 일련의 후속 채용 절차를 거쳐 다음 해 3. 1.자로 교수로 신규채용되었다.

1) 위 사람은 2009. 7. 31. ●●●●대학원으로부터 '박사학위 예정자도 지원가능한지'를 묻는 '교원신규임용 관련 질의회신 요청' 공문을 받고 '우리 대학에서 공개채용 시에도 접수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개채용이 아닌 다른 형태의 채용을 하더라도 지원서 접수일 현재 박사학위 예정자는 불가하며 이렇게 당연한 사안에 대해 내부 기관 간에 공문으로 질의회신 요청을 보낸 사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지원서 접수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니면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자임

이에 대해 위 사람은 자신이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결격자의 지원서류를 접수하라고 지시하였더라도 지원자격 결격이나 심사진행
여부는 지원서류 접수 후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할 사항이라고 변명하나
당시 교수채용 공고문에 명백하게 ‘학력 및 연구실적 기준 미충족자가 지원한
경우 결격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서류 접수 시에 결격처리하였어야 할
사항이므로¹⁾ 그 변명은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을의 경우

위 사람은 2010학년도 상반기 ▲▲▲ 분야 교수 공개채용 시 접수일 현재
박사학위가 없으면 결격처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교무처에서 접
수하였다’라는 사유만으로 ‘채용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뒤, 당시 상급자인 ▼▼▼
▼대학원장 ●●● 등에게 결격자인 ◎◎◎을 교수로 채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하지 않은 채 교수채용 심사업무를 그대로 진행하여 “1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위 사람은 지원자격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교무처 소관·책임
이라고 변명하나 지원자격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의 1차적인 소관·책임이 교무
처에 있고, 설령 교무처에서 접수일 현재 박사학위가 없어 결격처리하여야 할
지원자의 지원서류를 접수했더라도 교수채용 실지 심사과정에서 ▼▼▼▼대학원
●●과장으로 교수채용 심사일 현재 박사학위가 없고 연구실적이 부족한 지원자
는 결격처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결격자를 교수로 채용하

1) 교수채용 관련 지원서류 접수업무 등을 교무처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2009. 7. 31. ▼▼▼▼대학원에서 교무처에
공문으로 ‘박사학위 예정자도 지원 가능한지’를 질의회신하는 등 교수채용 관련 교무처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함

는 것이 부당하다고 상급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기초심사평가표, 연구실적
심사평가표 등을 만들어 그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변명은 사유
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위 사람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보(인사자료)

제 목 교수 채용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업무 부당 처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

통보 대상자 서울시립대학교 ∴∴학과
부교수 ○○○
(전 ∴∴전문대학원 ××과장)

내 용

위 사람은 2007. 2. 1.부터 2009. 1. 31.까지 위 대학교 ∴∴전문대학원 ××과장의 직위에서 2009. 3. 1.자 ⊗⊗⊗⊗분야 교수 신규채용을 위한 연구실적 심사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규임용규정」 제14조 및 별지 서식 제6호 일반분야 연구실적심사평가표(A)에 따르면 연구실적은 ①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실적, ② 게재예정실적, ③ 3년 경과 5년 이내 발표한 실적의 합계 65점과 연구경력, 저술활동, 수상경력, 학계의 저명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 5점을 합한 총 70점 만점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실적 중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연구실적심사평가표(A)에 인정해서는 안 될 연구실적이 포함될 경우 다른 지원자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는 것을 잘 알면서도 2008년 12월 지원자 □□□의 연구실적심사평가표(A)를 작성하면서 [별표 1] “연구실적물 점수 산정 부적정 현황”과 같이 5년이 지난 연구실적 4편을 연구실적으로 부당하게 포함하였다.

심지어 위 사람은 연구실적심사평가표(A)를 작성하면서 2008. 12. 26. 외부 심사위원들이 연구실적을 평가하기도 전에 미리 내부심사위원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자신이 부여한 뒤, 심사 당일 심사위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기까지 했다.

그 결과 [별표 1] “연구실적물 점수 산정 부적정 현황”과 같이 □□□의 경우 연구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4편의 연구실적 점수 27점이 포함되어 [별표 2] “연구실적물 점수 정당 산정 시 임용 결과 변동 현황”과 같이 종합평가점수²⁾가 87점(실제 정당점수: 60점)이 됨으로써 당초 종합평가점수 83.5점인 차순위 지원자 ☆☆☆는 탈락하고, 2009. 3. 1.자로 □□□은 부당하게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에 대해 위 사람은 5년을 초과한 연구실적물에 대한 정확한 검증없이 연구실적심사평가표(A)를 작성하다 보니 발생한 실수라고 변명하나, 연구실적심사 대상자가 단지 2명뿐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만 했더라면 연구실적 5년 경과 여부는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며, 설령 실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수채용의 당락이 뒤바뀌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변명은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2) 종합평가점수(100점 = 연구실적심사 70점 + 공개발표심사 20점 + 면접심사 10점)가 가장 높은 지원자를 총장이 대학인사위원회에 회부한 뒤, 임용적격자로 의결되면 임용(「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규임용규정」 제14~제20조)

조치할 사항 위 사람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비위내용을 통보하오니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연구실적물 접수 산정 부적정 현황

(단위: 점)

성명 (지원자)	유형	연구 실적물 종류	연구실적물	발간 연월	000	000 (외부)	000 (외부)	000	000	000	인정 점수 (평균)	
□□□	A	3년 이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07.11.	5	5	5	5	5	5	5.00	
				'08. 2.	6	6	6	6	6	6	6.00	
				'08.11.	10	10	10	10	10	10	10.00	
				소계	21	21	21	21	21	21	21.00	
		3년 경과 5년 이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02. 2.	9	9	9	9	9	9	9	9.00
				'02. 9.	6	6	6	6	6	6	6.00	
				'02.12.	6	6	6	6	6	6	6.00	
				'03. 9.	6	6	6	6	6	6	6.00	
				'05.12.	6	6	6	6	6	6	6.00	
		소계	33	33	33	33	33	33	33	33.00		
		종합평가	5	5	5	5	5	5	5	5.00		
		합계	59	59	59	59	59	59	59	59.00		
		☆☆☆	A	3년 이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08. 8.	9	9	9	9	9	9
'08. 8.	8					8	8	8	8	8	8.00	
'08. 2.	6					6	6	6	6	6	6.00	
'07.12.	7					7	7	7	7	7	7.00	
'07. 8.	9					9	9	9	9	9	9.00	
'07. 5.	6					6	6	6	6	6	6.00	
'06. 9.	7					7	7	7	7	7	7.00	
소계	52			52	52	52	52	52	52.00			
3년 경과 5년 이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03.12.	6	6	6	6	6	6	6	6.00
				소계	6	6	6	6	6	6	6.00	
종합평가	1			1	2	1	1	1	1	1.17		
합계	59	59	60	59	59	59	59	59.17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2]

연구실적물 점수 정당 산정 시 임용 결과 변동 현황

(단위: 점)

성명 (지원자)	심사구분 및 심사위원	000	000	000	000	000	000	평균	당초 임용	부당점수 제외시 임용자
□□□	연구실적심사 ※ 부당점수 제외	32	32	32	32	32	32	32.00	○	
	공개강의심사	20	18	20	20	20	20	19.67		
	면접심사	000	000	000	X			평균		
		8	7	10				8.33		
	합계(연구실적심사 평균 + 공개강의심사 평균 + 면접심사 평균)									
☆☆☆	연구실적심사	59	59	60	59	59	59	59.17	○	
	공개강의심사	17	16	18	16	17	16	16.67		
	면접심사	000	000	000	X			평균		
		6	8	9				7.67		
	합계(연구실적심사 평균 + 공개강의심사 평균 + 면접심사 평균)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의요구·통보

제 목 재학생 성적 부여 등 학사 관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전남도립대학

내 용

전남도립대학에서 재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확인하고 평가시험을 거쳐 성적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과목의 이수에 있어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전남도립대학 학칙」 제32조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남도립대학 학칙 시행세칙」 제22조, 제26조,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교과 담당교수는 강의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여 각 교과목의 실제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는 시험 등의 점수에 불구하고 성적을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출석미달자의 성적은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입학지원 학생의 부족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학과는 정원을 감축하거나 유사 학과를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감사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직장 재직

여부¹⁾를 조회한 결과 2011. 11. 1. 현재 등록 중인 전체 학생 1,625명 중 ○○○ 등 303명(201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2011년 7월 이후 신규 취업자 제외)이 직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대학에서 직장 재직자 303명에 대하여 수업 출석 여부를 확인²⁾한 결과 [별표 1] “직장에 재직 중인 학생의 2011학년도 1학기 정상 수료 여부 확인 결과”와 같이 ○○○ 등 209명이 직장에 재직하는 등의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거나 교과목의 실제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위 대학에서는 ○○○ 등 209명에 대하여 성적을 부여하는 등 모든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으로 학사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위 대학 ▶▶▶▶과에서 2011학년도 1학기에 [표]와 같이 재학생 120명 중 직장에 재직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69명에 대하여 □□□ 등 35명은 원거리 학생³⁾으로 분류하여 시험일을 포함하여 3일만 출석하게 하는 등 학사관리를 한 결과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였는데도 [별표 2] “수업시간 수가 부족한 ●●●●과 학생에 대한 부당 성적처리 명세”와 같이 ○○○에게 “⊗ ⊗ ⊗ ⊗ ” 등 총 9과목(23학점)에 대하여 성적(평균평점 3.57)을 부여하는 등 69명 전원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하였다.

-
- 1) 취업률은 ‘교육역량 강화사업’ 평가 시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위 대학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재학생 중 직장인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음
 - 2) 성적은 교과목 단위로 부여하기 때문에 학생이 수강한 개별 교과목의 출석 현황과 성적 부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위 대학의 경우 직장에 재직 중인 학생이 303명으로 개별 교과목 단위(보통 학기당 10과목)로 분석하면 최소한 3,030건으로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대학에서는 학생의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학기의 정상 수료 여부를 확인하였음
 - 3) 위 대학 ▶▶▶▶과에서는 ‘원거리 학생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수업 참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학생의 경우 ‘원거리 학생’으로 분류하여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만 참여하면 모든 교과목에 성적을 부여하였음. ●●●●공학과의 경우도 재학생 1, 2학년 계 37명 중 14명을 ‘원거리 학생’으로 분류하여 성적 부여

[표] ▶▶▶▶과의 학생 현황 및 비정상 수료 현황

(단위: 명, %)

구분	정원	현원 (재학생)	비정상 수료자			정상수료자	정상수료 비율	
			원거리 학생	직장인 등	계			
▶▶▶▶과	1학년	60	60	20	17	37	23	38.3
	2학년	60	60	15	17	32	28	46.7
	계	120	120	35	34	69	51	42.5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리고 □□·□□□□과에서 2011학년도 신입생 40명을 선발하면서 신입생 선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등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하고 있어 수업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 등 10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한 후 [별표 3] “수업에 불참한 □□·□□□□과 학생에 대한 부당 성적처리 명세”와 같이 위 신입생을 포함한 17명의 재학생이 1학기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에게 “⊙⊙⊙⊙” 등 9과목(22학점)에 성적(평균평점 2.91)을 부여하는 등 17명 전원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하였다.

또한 ※※※※과에서도 2011학년도 신입생을 70명을 선발하면서 어린이 보육시설 등에 재직하고 있어 정상적인 수업 출석이 곤란한 ♣♣♣ 등 11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하여 위 신입생을 포함한 ◇◇◇◇4) 등 38명이 교과목의 실제 수업 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5)하였는데도 [별표 4] “수업시간 수가 부족한 ⊙⊙⊙⊙과 학생에 대한 부당 성적처리 명세”와 같이 성적을 부여하여 1학기 모든 교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 4)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재학생 ◇◇◇ 등은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전남도립대학의 경우 인근 대학 등록금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학위 취득 후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육교사보다 좋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어 위 대학에 입학하였다고 진술
- 5)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주중 전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평일 수업 출석이 불가능하고 토요일에 보강 수업을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담양까지 와서 수업에 출석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 ※※※※과에서는 2011학년도 1학기에 직장인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8시 40분까지 휴식 시간 등을 제외한 9시간 동안 16학점에 해당하는 수업을 보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보강 수업을 모두 출석하더라도 수업시간이 210시간으로 총 수업시간 인 390시간의 53%밖에 되지 않아 정상 이수가 불가능함

그 밖에 ✓✓✓✓과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업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직장인을 위하여 야간반과 주말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 등 11명의 경우 야간반과 주말반⁶⁾ 모든 수업에 출석하여도 수업시간 수는 82시간으로 1학기 총 수업시간인 360시간의 1/5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도 [별표 5] “수업시간 수가 부족한 ✓✓✓✓과 학생에 대한 부당 성적처리 명세”와 같이 □□□에게 “△△△ 개론” 등 11과목(23학점)에 대하여 성적(평균평점 3.87)을 부여하는 등 11명 전원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 총장은

[통보] ○○○ 등 209명에 대하여 교과목별 수업 출석 여부를 조사하여 「전남도립대학 학칙 시행세칙」 제22조, 제26조,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부여한 성적을 취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신입생 충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업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직장인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일이 없도록 신입생 정원을 감축하거나 유사 학과를 통합하는 등의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주의] 앞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학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6) 야간반은 화요일(18~21시), 주말반은 매월 2, 4주차 토요일(10~12시, 13~16시)에 운영

[별표 1]

직장에 재직 중인 학생의 2011학년도 1학기 정상 수료 여부 확인 결과

일련 번호	성 명	학 과	이수 학기	1학기 학점	입학 연도	취업일자	직 장 명 ^하	직장 소재지 (거주지)	실제정상수 료여부
1	00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1	3.11	2011	2007.04.0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서울 양천구	X
2	000		1	2.95	2011	2008.06.01.		전남 담양군	X
3	000		1	2.91	2011	2003.07.01.		경기 광명시	X
4	000		1	2.95	2011	1995.07.01.		경기 수원시	X
5	000		1	2.95	2011	1995.07.01.		경기 수원시	X
6	000		1	2.95	2011	1995.07.01.		경기 수원시	X
7	000		1	2.95	2011	2006.12.27.		전남 담양군	X
8	000		1	2.91	2011	2009.10.12.		경기 성남시	X
9	000		1	2.91	2011	2011.07.01.		서울 서초구	X
10	000		1	2.91	2011	2002.04.29.		광주 광산구	X
11	000		3	3.11	2010	2011.05.01.		광주 북구	X
12	000		3	2.97	2010	2010.02.11.		충남 보령시	X
13	000		3	3.08	2010	2009.07.01.		전북 전주시	X
14	000		3	2.97	2010	2009.06.01.		충남 보령시	X
15	000		3	4.17	2010	2009.03.09.		전남 담양군	○
16	000		3	2.89	2010	2008.12.29.		경기 남양주	X
17	000		3	3.33	2010	2008.10.24.		전남 장성군	X
18	000		3	3.06	2010	2008.03.01.		서울 영등포	X
19	000		1	2.74	2011	2011.09.07.		광주 광산구	○
20	000		3	4.24	2010	2010.08.01.		서울 양천구	○
21	000		1	2.65	2011	1995.07.01.		서울 중구	X
22	000		3	3.09	2010	2011.06.01.		경기 부천시	X
23	000		3	4.36	2010	2010.09.01.		광주 서구	○
24	000		3	4.05	2010	2008.09.01.		광주 북구	X
25	000		3	4.05	2010	2002.11.02.		광주 서구	X
26	000		1	3.87	2011	2007.01.01.		전남 장성군	X
27	000		1	2.96	2011	2010.01.01.		광주	X
28	000		3	2.95	2010	2000.01.01.		경기 가평군	X
29	000		3	3.52	2010	2010.01.01.		광주	X
30	000		3	3.98	2010	2010.01.01.		담양	X
31	000		3	2.86	2010	2010.01.01.		경북 경주	X
32	000		3	3.5	2006	1995.07.01.		서울 강동구	X
33	000		2	1.17	2010	2010.11.23.		경기 고양시	X
34	000		3	2.95	2010	2011.05.25.		전남 해남군	X
35	000		1	3.57	2011	2004.02.16.		서울 광진구	○
36	000		1	3.43	2011	2011.04.15.		전남 담양군	○
37	000		1	3.32	2008	2008.02.01.		전남 담양군	○
38	000		1	3.61	2011	2010.12.01.		전남 담양군	○
39	000		1	3.7	2011	2010.06.03.		광주 광산구	○
40	000		1	1.57	2011	2011.01.20.		전남 담양군	○
41	000		1	3.96	2011	2004.10.01.		전남 담양군	○

입원 번호	성 명	학 과	이수 학기	1학기 학점	입학 연도	취업일자	직 장 명 ^취	직장 소재지 (거주지)	실제정상수 료여부
42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3	4.43	2010	2011.08.0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광주 광산구	○
43	○○○		3	4.32	2010	2011.08.01.		전남 담양군	○
44	○○○		1	4	2011	2010.12.01.		전남 담양군	○
45	○○○		1	3.74	2011	2006.03.20.		전남 담양군	○
46	○○○		3	2.52	2010	2011.05.01.		전남 장성군	○
47	○○○		3	3.84	2010	2011.03.21.		경기 안양시	○
48	○○○		3	4.16	2010	2011.02.28.		전남 장성군	○
49	○○○		3	4.07	2010	2011.02.01.		전남 무안군	○
50	○○○		3	4.11	2010	2011.02.01.		광주 광산구	○
51	○○○		3	3.8	2010	2010.11.13.		전남 담양군	○
52	○○○		3	4.05	2010	2010.09.02.		전남 담양군	○
53	○○○		3	3.27	2010	2010.06.07.		전북 순창군	○
54	○○○		3	2.68	2010	2010.02.01.		전남 곡성군	○
55	○○○		3	3.2	2010	2009.10.01.		전남 고흥군	○
56	○○○		3	3.75	2010	2009.07.01.		광주 남구	○
57	○○○		3	4.3	2010	2009.07.01.		광주 동구	○
58	○○○		3	4.14	2010	2009.01.01.		전남 담양군	○
59	○○○		3	3.98	2010	2007.07.02.		전남 담양군	○
60	○○○		3	3.41	2010	2006.09.01.		광주 북구	○
61	○○○		3	4.05	2010	2002.12.01.		전남 곡성군	○
62	○○○		1	4.15	2011	2011.08.01.		광주 동구	○
63	○○○		3	2.39	2010	2009.08.20.		서울 강남구	X
64	○○○		1	3.32	2011	2010.12.21.		전북 부안군	○
65	○○○		1	3.73	2011	2005.02.01.		서울 강서구	X
66	○○○		1	3.23	2011	2000.03.21.		경기 수원시	X
67	○○○		1	3.27	2011	2011.01.16.		경기 수원시	X
68	○○○		1	3.3	2011	2004.11.15.		경기 수원시	X
69	○○○		1	3.25	2011	2011.09.01.		충남 천안시	X
70	○○○		1	3.23	2011	2003.01.02.		광주 북구	○
71	○○○		1	3.61	2011	2009.03.01.		전남 화순군	○
72	○○○		1	3.66	2011	2008.03.01.		광주 광산구	○
73	○○○		1	3.27	2011	2011.01.10.		경기 성남시	X
74	○○○		3	3.65	2010	2011.05.01.		울산 남구	X
75	○○○		3	3.7	2010	2011.03.01.		전남 순천시	○
76	○○○		3	3.6	2010	2011.02.14.		서울 광진구	X
77	○○○	3	3.7	2008	2011.02.07.	광주 북구	○		
78	○○○	3	3.65	2010	2010.11.03.	대전 유성구	X		
79	○○○	3	3.85	2010	2010.05.31.	서울 중구	X		
80	○○○	3	3.95	2010	2010.05.24.	서울 서초구	X		
81	○○○	3	3.73	2010	2010.04.01.	광주 북구	○		
82	○○○	3	3.73	2007	2010.03.23.	전남 담양군	○		
83	○○○	3	3.73	2010	2009.04.01.	광주 광산구	○		
84	○○○	3	4	2010	2007.09.14.	광주 광산구	○		
85	○○○	3	3.68	2010	2005.12.30.	전남 나주시	○		

일련 번호	성 명	학 과	이수 학기	1학기 학점	입학 연도	취업일자	직 장 명 ^취	직장 소재지 (거주지)	실제정상수 료여부
86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3	3.83	2010	2004.01.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광주 광산구	X
87	○○○		1	2.55	2011	2010.07.01.		서울 중구	X
88	○○○		1	4.36	2011	2011.07.09.		부산 진구	○
89	○○○		3	2.75	2010	2010.03.01.		전남 광양시	○
90	○○○		3	4.15	2010	2009.01.01.		광주 동구	○
91	○○○		3	3.22	2010	2011.10.13.		전남 나주시	○
92	○○○		3	2.61	2010	2011.09.28.		광주 서구	○
93	○○○		3	4.17	2010	2011.09.01.		광주 남구	○
94	○○○		3	2.65	2010	2011.05.16.		전남 순천시	X
95	○○○		1	3.09	2011	2005.03.02.		광주 북구	X
96	○○○		1	3.04	2011	2009.02.25.		전남 신안군	X
97	○○○		1	3.33	2011	1997.11.28.		서울 송파구	X
98	○○○		1	2.72	2011	2011.09.20.		전남 화순군	X
99	○○○		1	3.24	2011	2006.03.25.		전남 담양군	X
100	○○○		1	3.33	2011	2011.01.02.		전남 담양군	X
101	○○○		1	2.39	2011	2009.03.01.		광주 광산구	X
102	○○○		1	3	2011	2010.11.01.		광주 북구	○
103	○○○		1	3.02	2011	2011.01.10.		광주 광산구	○
104	○○○		1	3.04	2011	2011.05.01.		전남 담양군	○
105	○○○		3	3.26	2010	2011.03.01.		전남 영암군	X
106	○○○		3	2.61	2010	2005.03.26.		전남 나주시	X
107	○○○		3	2.65	2008	1995.09.01.		광주 동구	X
108	○○○		3	4.21	2010	2011.06.27.		전남 화순군	○
109	○○○		3	3.5	2008	2011.05.30.		전북 무주군	○
110	○○○		3	3.59	2008	2011.05.30.		전북 무주군	○
111	○○○		1	2.38	2011	2011.05.01.		광주 광산구	X
112	○○○		1	2.77	2011	2011.01.01.		전북 익산시	○
113	○○○		1	3.06	2011	2006.10.11.		광주 남구	○
114	○○○		3	3.24	2010	2010.10.20.		전남 순천시	○
115	○○○	3	4.39	2010	2010.07.05.	광주 북구	○		
116	○○○	3	4.39	2010	2009.01.01.	전남 해남군	○		
117	○○○	3	2.61	2010	2001.12.30.	전남 무안군	X		
118	○○○	3	2.66	2010	2011.09.06.	광주 광산구	X		
119	○○○	3	3	2010	2011.09.01.	대전 유성구	X		
120	○○○	3	2.74	2010	2011.06.20.	광주 광산구	X		
121	○○○	3	2.97	2010	2011.03.04.	경기 오산시	X		
122	○○○	3	2.92	2010	2011.03.02.	경기 수원시	X		
123	○○○	1	3.05	2011	2010.10.01.	경기 성남시	X		
124	○○○	1	3	2011	1995.07.01.	광주 광산구	X		
125	○○○	1	3.1	2011	2011.01.03.	서울 성북구	X		
126	○○○	1	2.9	2011	2004.06.01.	대전 서구	X		
127	○○○	1	3	2011	2011.02.01.	경기 수원시	X		
128	○○○	1	3.14	2011	2010.08.05.	광주 북구	X		
129	○○○	1	3.1	2011	2011.02.01.	광주 북구	X		

일련 번호	성 명	학 과	이수 학기	1학기 학점	입학 연도	취업일자	직 장 명 ^취	직장 소재지 (거주지)	실제정상수 료유부
130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1	3.1	2011	2003.10.2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경기 용인시	X
131	○○○		1	3	2011	1995.07.01.		대전 대덕구	X
132	○○○		1	3.81	2011	2011.03.14.		광주 광산구	X
133	○○○		1	3	2011	2009.12.24.		대전 서구	X
134	○○○		3	3.08	2010	2011.02.01.		광주 북구	X
135	○○○		5	3.13	2009	2011.06.17.		경기 화성시	X
136	○○○		5	3.15	2009	2011.04.21.		대전 동구	X
137	○○○		5	3.15	2009	2010.12.09.		경기 남양주	X
138	○○○		5	2.94	2009	2010.06.20.		대전 중구	X
139	○○○		5	3.15	2009	2010.02.01.		대전 유성구	X
140	○○○		5	2.94	2009	2009.09.07.		경기 남양주	X
141	○○○		5	3.09	2009	2009.09.01.		서울 광진구	X
142	○○○		5	3.05	2009	2008.12.01.		경기 광주시	X
143	○○○		5	3.09	2009	2007.03.01.		서울 마포구	X
144	○○○		3	2.92	2010	2010.06.21.		전북 전주시	X
145	○○○		3	2.66	2010	2010.03.01.		충남 당진군	X
146	○○○		3	2.66	2010	2009.07.01.		대전 대덕구	X
147	○○○		3	3.08	2010	2009.04.01.		경기 수원시	X
148	○○○		3	2.74	2010	2009.03.01.		충남 당진군	X
149	○○○		3	2.74	2010	2009.03.01.		광주 북구	X
150	○○○		3	3.08	2010	2008.09.01.		대전 서구	X
151	○○○		3	3.39	2011	2008.07.01.		경남 사천시	X
152	○○○		3	2.74	2010	2008.05.06.		광주 북구	X
153	○○○		3	2.66	2010	2006.11.01.		충남 당진군	X
154	○○○		3	3.53	2010	2006.04.01.		대전 중구	X
155	○○○		3	2.66	2010	2005.06.01.		광주 동구	X
156	○○○		3	3.33	2008	2011.05.12.		경북 구미시	○
157	○○○		2	3.83	2008	2011.07.11.		경기 평택시	○
158	○○○		3	2.67	2005	2010.07.01.		경기 동두천	○
159	○○○		3	2.42	2006	2010.05.10.		전남 광양시	○
160	○○○		3	2.33	2010	2009.11.01.		경남 밀양시	X
161	○○○		3	2.48	2010	2009.05.06.		충남 공주시	X
162	○○○		3	2.33	2010	1996.09.30.		서울 서초구	X
163	○○○		3	2.33	2010	1995.07.01.		서울 서초구	X
164	○○○		1	2.88	2011	2006.07.01.		전남 순천시	X
165	○○○		3	4.16	2010	2011.05.16.		경기 수원시	○
166	○○○		3	4.11	2008	2011.05.12.		경북 구미시	○
167	○○○		3	3.25	2010	2011.09.16.		전남 광양시	○
168	○○○		3	3.5	2010	2011.08.01.		전남 곡성군	○
169	○○○		3	3.33	2010	2011.04.01.		전남 담양군	○
170	○○○		3	3.25	2010	2010.10.25.		전남 구례군	X
171	○○○		3	4.42	2010	2010.10.13.		경기 화성시	X
172	○○○		3	4.42	2010	2010.10.13.		경기 화성시	X
173	○○○	3	3.33	2010	2010.10.01.	경기 포천군	X		

일련 번호	성 명	학 과	이수 학기	1학기 학점	입학 연도	취업일자	직 장 명 ^취	직장 소재지 (거주지)	실제정상수 료여부
174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1	4.33	2011	2005.10.1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광주시 북구	○
175	○○○		1	3.67	2011	2006.06.01.		경기 안양시	X
176	○○○		1	4.33	2011	2011.09.14.		인천 남구	X
177	○○○		1	3.75	2011	2009.03.12.		전남 담양군	○
178	○○○		1	4.08	2011	2011.03.14.		서울 송파구	X
179	○○○		1	3.25	2011	2011.08.01.		광주 서구	○
180	○○○		1	4.08	2011	2009.10.05.		광주 북구	○
181	○○○		1	4.42	2011	2011.04.25.		광주 광산구	○
182	○○○		1	3.25	2011	2010.07.19.		경기 성남시	X
183	○○○		1	4.33	2011	2010.08.02.		경기 성남시	X
184	○○○		1	4.08	2011	2010.12.01.		전남 나주시	○
185	○○○		1	4.08	2011	2009.09.04.		서울 송파구	X
186	○○○		1	4.33	2011	2007.05.15.		광주시 북구	○
187	○○○		1	4.42	2011	2010.02.01.		광주 서구	○
188	○○○		3	3.25	2010	2009.05.23.		광주 북구	○
189	○○○		3	4.42	2010	2007.11.01.		경기 용인시	○
190	○○○		3	3.33	2010	2007.06.01.		전남 화순군	X
191	○○○		3	4	2010	2007.05.10.		전남 신안군	○
192	○○○		3	3.83	2010	2006.02.16.		경기 성남시	X
193	○○○		1	3.25	2011	2010. 10.		인천서구	X
194	○○○		1	4.33	2011	1990.01.01.		인천	X
195	○○○		3	3.55	2010	2011.06.01.		광주 동구	X
196	○○○		3	3.64	2010	2011.05.01.		광주 서구	X
197	○○○		3	3.45	2010	2011.03.02.		전북 임실군	X
198	○○○		3	3.45	2007	2011.03.02.		전북 김제시	X
199	○○○		3	3.14	2010	2011.03.01.		전북 남원시	X
200	○○○		3	3.45	2010	2011.03.01.		경북 상주시	X
201	○○○	3	3.55	2010	2011.02.16.	경기 화성시	X		
202	○○○	3	3.55	2010	2010.10.17.	전남 나주시	X		
203	○○○	3	3.05	2010	2010.08.18.	서울 서초구	X		
204	○○○	3	3.45	2010	2010.08.07.	광주 광산구	X		
205	○○○	3	3.05	2010	2010.04.01.	전남 장성군	X		
206	○○○	3	3.05	2010	2010.04.01.	전남 영암군	X		
207	○○○	3	3.5	2010	2010.04.01.	전북 고창군	X		
208	○○○	3	3.64	2010	2010.03.01.	충남 보령시	X		
209	○○○	3	3.45	2010	2010.02.01.	광주 북구	X		
210	○○○	1	3	2011	2011.03.01.	전북 전주시	X		
211	○○○	1	3.5	2011	1997.06.16.	경기 이천시	X		
212	○○○	1	3	2011	2000.03.21.	광주 북구	X		
213	○○○	1	3.54	2011	2010.04.12.	경기 용인시	X		
214	○○○	3	3.14	2010	2009.10.01.	전북 남원시	X		
215	○○○	3	3.5	2010	2009.09.20.	전남 순천시	X		
216	○○○	1	3.5	2011	2011.02.24.	전남 장흥군	X		
217	○○○	1	2.93	2011	2008.05.07.	서울 양천구	X		

일련 번호	성 명	학 과	이수 학기	1학기 학점	입학 연도	취업일자	직 장 명 ^취	직장 소재지 (거주지)	실제정상수 료여부
218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1	3.5	2011	2011.03.0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광주 서구	X
219	○○○		1	3.57	2011	2011.01.03.		대전 유성구	X
220	○○○		1	3.33	2011	2008.07.25.		전남 함평군	X
221	○○○		1	3.2	2011	1995.07.01.		서울 중구	X
222	○○○		1	3.57	2011	2008.01.04.		대전 유성구	X
223	○○○		1	3.5	2011	2008.01.25.		광주 동구	X
224	○○○		1	2.93	2011	2010.08.25.		전남 고흥군	X
225	○○○		1	3.63	2011	2007.02.12.		전남 여수시	X
226	○○○		1	3.5	2011	2008.04.24.		광주 서구	X
227	○○○		1	2.93	2011	2001.03.02.		전남 화순군	X
228	○○○		3	3.45	2010	2009.01.01.		경기 안양시	X
229	○○○		3	3.45	2010	2009.01.01.		경기 안양시	X
230	○○○		1	3.57	2011	2011.01.03.		대전 유성구	X
231	○○○		1	3.5	2011	2008.07.01.		전남 담양군	X
232	○○○		1	3.17	2011	2011.06.01.		서울 영등포	X
233	○○○		3	3.45	2010	2008.11.05.		전남고흥군	X
234	○○○		1	3.11	2011	2011.01.10.		전남 장흥군	X
235	○○○		1	3.07	2011	2008.07.01.		경기 부천시	X
236	○○○		1	3.63	2011	2007.03.21.		경기 용인시	X
237	○○○		1	3.07	2011	2010.03.19.		전북 순창군	X
238	○○○		1	3.5	2011	1997.06.02.		광주 북구	X
239	○○○		1	3.5	2011	2010.03.19.		전북 고창군	X
240	○○○		1	3.5	2011	2010.03.02.		전남 담양군	X
241	○○○		1	3.52	2011	2001.12.22.		경기 양주시	X
242	○○○		1	3.52	2011	2006.12.28.		경기 양주시	X
243	○○○		1	3.5	2011	2003.01.01.		광주 북구	X
244	○○○		1	3.57	2011	2011.01.03.		대전 유성구	X
245	○○○		3	3.45	2010	2008.05.14.		광주 서구	X
246	○○○		3	3.55	2010	2008.01.21.		경기 수원시	X
247	○○○		3	3.55	2010	2007.08.01.		대전 서구	X
248	○○○		3	3.45	2010	2007.07.10.		서울 중구	X
249	○○○	3	3.05	2010	2007.07.01.	전북 전주시	X		
250	○○○	3	3.5	2007	2007.04.16.	서울 구로구	X		
251	○○○	3	3.59	2010	2004.10.01.	충남 아산시	X		
252	○○○	3	3.64	2010	1998.03.01.	전남 함평군	X		
253	○○○	1	3.57	2011	1997.04.24.	경기 양주시	X		
254	○○○	1	2.93	2011	2008. 10.	광주정읍	X		
255	○○○	1	2.93	2011	2004.01.01.	서울	X		
256	○○○	1	2.93	2011	-	(광주 광산구)	X		
257	○○○	1	3.07	2011	2011. 04.	인천 연수구	X		
258	○○○	1	3	2011	2010.01.01.	서울	X		
259	○○○	1	3.43	2011	2000.06.08.	대전	X		
260	○○○	2	3.39	2009	2008. 10.	서울 성북구	X		
261	○○○	2	3.6	2010	2010. 7.	경기 일산시	X		

일련 번호	성 명	학 과	이수 학기	1학기 학점	입학 연도	취업일자	직 장 명 ^취	직장 소재지 (거주지)	실제정상수 료여부
262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2	3.46	2010	2006.02.0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대전	X
263	○○○		2	3.28	2010	1991. 1		경기 광명시	X
264	○○○		3	4.27	2010	2010.09.01.		광주 동구	○
265	○○○		3	3.27	2010	2009.10.15.		광주 서구	○
266	○○○		3	3.09	2010	2008.11.01.		광주 서구	○
267	○○○		3	3.59	2010	2008.08.25.		광주 동구	○
268	○○○		1	3.5	2011	2011.09.22.		광주 북구	X
269	○○○		1	3.38	2011	2010.05.01.		인천 부평구	○
270	○○○		1	4.21	2011	2011.09.05.		광주 북구	X
271	○○○		1	3.42	2011	2011.08.01.		서울 은평구	X
272	○○○		1	3.44	2011	2011.04.12.		서울 강남구	X
273	○○○		3	2.93	2010	2004.01.02.		전남 담양군	X
274	○○○		3	3.1	2010	2011.05.16.		광주 서구	○
275	○○○		3	3	2010	2008.02.01.		전북 남원시	○
276	○○○		3	3.52	2010	2011.08.01.		전남 고흥군	○
277	○○○		3	3.74	2010	2011.07.01.		전남 여수시	X
278	○○○		3	3.83	2010	2011.05.16.		광주시 북구	X
279	○○○		3	3.6	2010	2011.02.01.		전남 진도	X
280	○○○		3	2.81	2010	2011.01.01.		광주 광산구	○
281	○○○		3	2.74	2010	2010.04.01.		전북 고창군	X
282	○○○		3	3.74	2010	1995.07.01.		전남 여수시	X
283	○○○		1	2.75	2011	2011.09.07.		광주 광산구	○
284	○○○		1	3.29	2011	2010.07.14.		전남 순천시	○
285	○○○		1	3.21	2011	2011.08.17.		광주 광산구	○
286	○○○		1	3.21	2011	2004.01.29.		전남 광양시	X
287	○○○		1	3.15	2011	2010.02.01.		광주 동구	○
288	○○○		1	3.17	2011	2007.06.01.		광주 서구	○
289	○○○		3	2.55	2006	2011.03.01.		광주 서구	X
290	○○○		3	2.55	2010	2010.12.01.		광주 서구	X
291	○○○		3	2.98	2010	2009.07.14.		전남 여수시	X
292	○○○		1	2.4	2011	2011.03.01.		대전 서구	X
293	○○○		1	2.44	2011	2008.11.17.		경기 안성시	X
294	○○○		4	2.82	2006	2010.11.01.		경기 안양시	X
295	○○○	3	2.55	2010	2005.09.26.	전남 영암군	X		
296	○○○	3	3.48	2010	2011.02.16.	서울 영등포	X		
297	○○○	3	3.07	2010	2010.04.26.	전남 영암군	X		
298	○○○	3	2.93	2010	2008.10.13.	광주 동구	X		
299	○○○	3	2.91	2009	2007.01.05.	전남 장흥군	X		
300	○○○	3	2.93	2010	2003.03.03.	서울 구로구	X		
301	○○○	3	3.64	2010	1998.01.01.	전남 여수시	X		
302	○○○	3	3.64	2010	1998.01.01.	전남 여수시	X		
303	○○○	3	3.64	2010	1998.01.01.	전남 여수시	X		

주) 직장명은 한국고용정보원에 등록된 회사명을 그대로 인용하였음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2]

수업시간 수가 부족한 ●●●●과 학생에 대한 부당 성적처리 명세

일련 번호	성명	입학 연도	2011년 1학기		취업일자	직장명	직장 소재지 (거주지)	원거리학생 대상여부
			이수과목	학점				
1	○○○	2011	○○○○ 등 10개 과목 (23학점)	3.57	1997.04.2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경기 양주시	0
2	○○○	2011		2.93	2008. 10.		광주정읍	0
3	○○○	2011		2.93	2004.01.01.		서울	0
4	○○○	2011		2.93	-		(광주 광산구)	0
5	○○○	2011		3.07	2011. 04.		인천 연수구	0
6	○○○	2011		3	2010.01.01.		서울	0
7	○○○	2011		3.43	2000.06.08.		대전	0
8	○○○	2011		3	2011.03.01.		전북 전주시	
9	○○○	2011		3.5	1997.06.16.		경기 이천시	0
10	○○○	2011		3	2000.03.21.		광주 북구	
11	○○○	2011		3.54	2010.04.12.		경기 용인시	0
12	○○○	2011		3.5	2011.02.24.		전남 장흥군	
13	○○○	2011		2.93	2008.05.07.		서울 양천구	0
14	○○○	2011		3.5	2011.03.01.		광주 서구	
15	○○○	2011		3.57	2011.01.03.		대전 유성구	0
16	○○○	2011		3.33	2008.07.25.		전남 함평군	
17	○○○	2011		3.2	1995.07.01.		서울 중구	0
18	○○○	2011		3.57	2008.01.04.		대전 유성구	0
19	○○○	2011		3.5	2008.01.25.		광주 동구	
20	○○○	2011		2.93	2010.08.25.		전남 고흥군	
21	○○○	2011		3.63	2007.02.12.		전남 여수시	
22	○○○	2011		3.5	2008.04.24.		광주 서구	
23	○○○	2011		2.93	2001.03.02.		전남 화순군	
24	○○○	2011		3.57	2011.01.03.		대전 유성구	0
25	○○○	2011		3.5	2008.07.01.		전남 담양군	
26	○○○	2011		3.17	2011.06.01.		서울 영등포	0
27	○○○	2011		3.11	2011.01.10.		전남 장흥군	
28	○○○	2011		3.07	2008.07.01.		경기 부천시	0
29	○○○	2011		3.63	2007.03.21.		경기 용인시	0
30	○○○	2011		3.07	2010.03.19.		전북 순창군	
31	○○○	2011		3.5	1997.06.02.		광주 북구	
32	○○○	2011		3.5	2010.03.19.		전북 고창군	
33	○○○	2011		3.5	2010.03.02.		전남 담양군	
34	○○○	2011		3.52	2001.12.22.		경기 양주군	0

일련 번호	성명	입학 연도	2011년 1학기		취업일자	직장명	직장 소재지 (거주지)	원거리학생 대상여부
			이수과목	학점				
35	○○○	2011		3.52	2006.12.28.		경기 양주시	0
36	○○○	2011		3.5	2003.01.01.		광주 북구	
37	○○○	2011		3.57	2011.01.03.		대전 유성구	0
38	○○○	2010	○○○○ 등 10개 과목 (22학점)	3.28	1991. 0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경기 광명시	0
39	○○○	2010		3.6	2010. 07.		경기 일산시	0
40	○○○	2010		3.46	2006.02.09.		대전	0
41	○○○	2010		3.45	2011.03.02.		전북 임실군	0
42	○○○	2010		3.05	2010.04.01.		전남 장성군	
43	○○○	2010		3.45	2009.01.01.		경기 안양시	0
44	○○○	2010		3.45	2008.05.14.		광주 서구	
45	○○○	2010		3.55	2011.06.01.		광주 동구	0
46	○○○	2010		3.45	2009.01.01.		경기 안양시	0
47	○○○	2010		3.14	2009.10.01.		전북 남원시	
48	○○○	2010		3.55	2008.01.21.		경기 수원시	0
49	○○○	2010		3.59	2004.10.01.		충남 아산시	0
50	○○○	2010		3.5	2009.09.20.		전남 순천시	
51	○○○	2010		3.05	2010.04.01.		전남 영암군	
52	○○○	2010		3.05	2010.08.18.		서울 서초구	0
53	○○○	2010		3.45	2007.07.10.		서울 중구	
54	○○○	2010		3.64	2011.05.01.		광주 서구	
55	○○○	2010		3.45	2010.02.01.		광주 북구	
56	○○○	2010		3.64	1998.03.01.		전남 함평군	
57	○○○	2010		3.14	2011.03.01.		전북 남원시	
58	○○○	2010		3.45	2010.08.07.		광주 광산구	
59	○○○	2010		3.64	2010.03.01.		충남 보령시	0
60	○○○	2010		3.55	2010.10.17.		전남 나주시	
61	○○○	2010		3.45	2011.03.01.		경북 상주시	
62	○○○	2010		3.55	2007.08.01.		대전 서구	0
63	○○○	2010		3.05	2007.07.01.		전북 전주시	
64	○○○	2010		3.5	2010.04.01.		전북 고창군	
65	○○○	2010		3.55	2011.02.16.		경기 화성시	0
66	○○○	2010	3.45	2008.11.05.	전남 고흥군			
67	○○○	2009	3.39	2008. 10.	서울 성북구	0		
68	○○○	2007	3.5	2007.04.16.	서울 구로구	0		
69	○○○	2007	3.45	2011.03.02.	전북 김제시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3]

수업에 불참한 ●●●●●●과 학생에 대한 부당 성적처리 명세

일련 번호	성명	입학 연도	2011년 1학기		취업일	직장명	직장 소재지
			이수과목	학점			
1	○○○	2011	○○○○ 등 9개 과목 (22학점)	2.91	2003.07.0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경기 광명시
2	○○○	2011		3.11	2007.04.01.		서울 양천구
3	○○○	2011		2.95	2008.06.01.		전남 담양군
4	○○○	2011		2.95	1995.07.01.		경기 수원시
5	○○○	2011		2.95	1995.07.01.		경기 수원시
6	○○○	2011		2.95	1995.07.01.		경기 수원시
7	○○○	2011		2.95	2006.12.27.		전남 담양군
8	○○○	2011		2.91	2009.10.12.		경기 성남시
9	○○○	2011		2.91	2011.07.01.		서울 서초구
10	○○○	2011		2.91	2002.04.29.		광주 광산구
11	○○○	2010	●●●●● 등 8개 과목 (18학점)	3.11	2011.05.01.	광주 북구	
12	○○○	2010		2.97	2010.02.11.	충남 보령시	
13	○○○	2010		3.08	2009.07.01.	전북 전주시	
14	○○○	2010		2.97	2009.06.01.	충남 보령시	
15	○○○	2010		2.89	2008.12.29.	경기 남양주	
16	○○○	2010		3.33	2008.10.24.	전남 장성군	
17	○○○	2010		3.06	2008.03.01.	서울 영등포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4]

수업시간 수가 부족한 ○○○○과 학생에 대한 부당 성적처리 명세

일련 번호	성명	입학 연도	2011년 1학기		취업일 ^{주)}	직장명	직장 소재지
			이수과목	학점			
1	○○○	2011	○○○○○ 등 8개 과목 (21학점)	3.1	2011.01.0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서울 성북구
2	○○○	2011		3.05	2010.10.01.		경기 성남시
3	○○○	2011		3	1995.07.01.		광주 광산구
4	○○○	2011		2.9	2004.06.01.		대전 서구
5	○○○	2011		3	2011.02.01.		경기 수원시
6	○○○	2011		3.14	2010.08.05.		광주 북구
7	○○○	2011		3.1	2011.02.01.		광주 북구
8	○○○	2011		3.1	2003.10.27.		경기 용인시
9	○○○	2011		3	1995.07.01.		대전 대덕구
10	○○○	2011		3.81	2011.03.14.		광주 광산구
11	○○○	2011		3	2009.12.24.		대전 서구
12	○○○	2011		3.39	2008.07.01.		경남 사천시
13	○○○	2010		○○○○○ 이 7개 과목 (19학점)	2.66		2011.09.06.
14	○○○	2010	3		2011.09.01.	대전 유성구	
15	○○○	2010	2.74		2011.06.20.	광주시 광산구	
16	○○○	2010	2.97		2011.03.04.	경기 오산시	
17	○○○	2010	2.92		2011.03.02.	경기 수원시	
18	○○○	2010	3.08		2011.02.01.	광주 북구	
19	○○○	2010	2.92		2010.06.21.	전북 전주시	
20	○○○	2010	2.66		2010.03.01.	충남 당진군	
21	○○○	2010	2.66		2009.07.01.	대전 대덕구	
22	○○○	2010	3.08		2009.04.01.	경기 수원시	
23	○○○	2010	2.74		2009.03.01.	충남 당진군	
24	○○○	2010	2.74		2009.03.01.	광주 북구	
25	○○○	2010	3.08		2008.09.01.	대전 서구	
26	○○○	2010	2.74	2008.05.06.	광주 북구		
27	○○○	2010	2.66	2006.11.01.	충남 당진군		
28	○○○	2010	3.53	2006.04.01.	대전 중구		
29	○○○	2010	2.66	2005.06.01.	광주 동구		
30	○○○	2009	○○○○○ 이 8~9개 과목 (19~22학점)	3.13	2011.06.17.	경기 화성시	
31	○○○	2009		3.15	2011.04.21.	대전 동구	
32	○○○	2009		3.15	2010.12.09.	경기 남양주시	
33	○○○	2009		2.94	2010.06.20.	대전 중구	
34	○○○	2009		3.15	2010.02.01.	대전 유성구	
35	○○○	2009		2.94	2009.09.07.	경기 남양주시	
36	○○○	2009		3.09	2009.09.01.	서울 광진구	
37	○○○	2009		3.05	2008.12.01.	경기 광주시	
38	○○○	2009		3.09	2007.03.01.	서울 마포구	

주) 취업일은 현 직장의 취업일이며 최초 취업일이 아님(예: ○○○의 경우 2007. 11. 1.부터 보육교사로 근무)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5]

수업시간 수가 부족한 ○○○○과 학생에 대한 부당 성적처리 명세

일련 번호	성명	입학 연도	2011년 1학기		취업일자	직 장 명	직장 소재지
			이수과목	학점			
1	○○○	2011	○○○ 개론 등 11개 과목 (23학점)	3.87	2007.01.0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전남 장성
2	○○○	2011		2.65	1995.07.01.		서울 중구
3	○○○	2011		2.96	2010.01.01.		광주광역시
4	○○○	2010	◇◇◇◇◇◇ 등 11개 과목 (22학점)	4.05	2002.11.02.		광주 서구
5	○○○	2010		3.09	2011.06.01.		경기 부천시
6	○○○	2010		4.05	2008.09.01.		광주 북구
7	○○○	2010		2.86	2010.01.01.		경북 경주
8	○○○	2010		2.95	2000.01.01.		경기도 가평
9	○○○	2010		3.52	2010.01.01.		광주광역시
10	○○○	2010		3.98	2010.01.01.		전남 담양
11	○○○	2006		3.5	1995.07.01.		서울 강동구

주1) 1학년의 경우 총 수업시간이 390시간이고, 야간반과 주말반 수업을 모두 출석하여도 82시간(21%)

2) 2학년의 경우 총 수업시간이 405시간이고, 야간반과 주말반 수업을 모두 출석하여도 82시간(20%)

※ 야간반과 주간반 수업은 1, 2학년 공동 수업 실시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재학생 성적 부여 등 학사 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관 계 기 관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내 용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등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도립대(총장 ○○○)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및 「전남도립대학 학칙」 제13조, 제32조 및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업 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교과목 총 수업 시간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남도립대학 학칙 시행세칙」 제22조, 제26조,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교과 담당교수는 강의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여 각 교과목의 실제 수업시간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는 시험 등의 점수에 불구하고 성적을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출석미달자의 성적은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직장 재직 여부¹⁾를 조회한 결과 2011. 11. 1. 현재 등록 중인 전체 학생 1,625명 중 ○○○ 등 303명(201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2011. 7월 이후 신규 취업

1) 취업률은 '교육역량 강화사업' 평가 시 교육성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위 대학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재학생 중 직장인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음

자 제외)이 직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대학에서 직장 재직자 303명에 대하여 수업 출석 여부를 확인²⁾한 결과 [별표 1] “직장에 재직 중인 학생의 2011학년도 1학기 정상 수료 여부 확인 결과”와 같이 ○○○ 등 209명이 직장에 재직하는 등의 사유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거나 교과목의 실제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위 대학에서는 ○○○ 등 209명에 대하여 성적을 부여하는 등 모든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으로 학사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위 대학 ●●●●과에서 2011학년도 1학기에 [표]와 같이 재학생 120명 중 직장에 재직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69명에 대하여 □□□ 등 35명은 원거리 학생³⁾으로 분류하여 시험일을 포함하여 3일만 출석하게 하는 등 학사관리를 한 결과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였는데도 [별표 2] “수업시간 수가 부족한 ●●●●과 학생에 대한 부당 성적처리 명세”와 같이 □□□에게 “⊗⊗⊗⊗” 등 총 9과목(23학점)에 대하여 성적(평균평점 3.57)을 부여하는 등 69명 전원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하였다.

[표] ●●●●과의 학생 현황 및 비정상 수료 현황

(단위: 명, %)

구분	정원	현원 (재학생)	비정상 수료자			정상수료자	정상수료 비율	
			원거리 학생	직장인 등	계			
●●●●과	1학년	60	60	20	17	37	23	38.3
	2학년	60	60	15	17	32	28	46.7
	계	120	120	35	34	69	51	42.5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2) 성적은 교과목 단위로 부여하기 때문에 학생이 수강한 개별 교과목의 출석 현황과 성적 부여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위 대학의 경우 직장에 재직 중인 학생이 303명으로 개별 교과목 단위(보통 학기당 10과목)로 분석 하면 최소한 3,030건으로 구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생의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학기의 정상 수료 여부를 확인하였음

3) 위 대학 ●●●●과에서는 ‘원거리 학생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수업 참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학생의 경우 ‘원거리 학생’으로 분류하여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만 참여하면 모든 교과목에 성적을 부여하였음. ●●●●공학과는 재학생 1, 2학년 계 37명 중 14명을 ‘원거리 학생’으로 분류하여 성적 부여

그리고 ●●●●●●과에서 2011학년도 신입생 40명을 선발하면서 신입생 선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 등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하고 있어 수업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 등 10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한 후 [별표 3] “수업에 불참한 ●●●●●●과 학생에 대한 부당 성적처리 명세”와 같이 위 신입생을 포함한 17명의 재학생이 1학기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에게 “○○○○” 등 9과목(22학점)에 성적(평균평점 2.91)을 부여하는 등 17명 전원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하였다.

또한 △△△△과에서도 2011학년도 신입생을 70명을 선발하면서 어린이 보육시설 등에 재직하고 있어 정상적인 수업 출석이 곤란한 ♣♣♣ 등 11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하여 위 신입생을 포함한 ◇◇◇4 등 38명이 교과목의 실제 수업 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⁵⁾하였는데도 [별표 4] “수업시간 수가 부족한 △△△△과 학생에 대한 부당 성적처리 명세”와 같이 성적을 부여하여 1학기 모든 교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그 밖에 ⊖⊖⊖⊖과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업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직장인을 위하여 야간반과 주말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 등 11명의 경우 야간반과 주말반⁶⁾ 모든 수업에 출석하여도 수업시간 수는 82시간으로 1학기 총 수업시간인 360시간의 1/5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도 [별표

4)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재학생 ○○○ 등은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전남도립대학의 경우 인근 대학 등록금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학위 취득 후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육교사보다 좋은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어 위 대학에 입학하였다고 진술

5) 보육교사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주중 전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평일 수업 출석이 불가능하고 토요일에 보강 수업을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담양까지 와서 수업에 출석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 △△△△과에서는 2011학년도 1학기에 직장인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8시 40분까지 휴식 시간 등을 제외한 9시간 동안 16학점에 해당하는 수업을 보강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보강 수업을 모두 출석하더라도 수업시간이 210시간으로 총 수업시간인 390시간의 53%밖에 되지 않아 정상 이수가 불가능함

6) 야간반은 화요일(18~21시), 주말반은 매월 2, 4주차 토요일(10~12시, 13~16시)에 운영

[별표 1]

직장에 재직 중인 학생의 2011학년도 1학기 정상 수료 여부 확인 결과

일련 번호	성 명	학 과	이수 학기	1학기 학점	입학 연도	취업일자	직 장 명 ^{후)}	직장 소재지 (거주지)	실제정상 수료여부
1	00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1	3.11	2011	2007.04.0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서울 양천구	X
2	000		1	2.95	2011	2008.06.01.		전남 담양군	X
3	000		1	2.91	2011	2003.07.01.		경기 광명시	X
4	000		1	2.95	2011	1995.07.01.		경기 수원시	X
5	000		1	2.95	2011	1995.07.01.		경기 수원시	X
6	000		1	2.95	2011	1995.07.01.		경기 수원시	X
7	000		1	2.95	2011	2006.12.27.		전남 담양군	X
8	000		1	2.91	2011	2009.10.12.		경기 성남시	X
9	000		1	2.91	2011	2011.07.01.		서울 서초구	X
10	000		1	2.91	2011	2002.04.29.		광주 광산구	X
11	000		3	3.11	2010	2011.05.01.		광주 북구	X
12	000		3	2.97	2010	2010.02.11.		충남 보령시	X
13	000		3	3.08	2010	2009.07.01.		전북 전주시	X
14	000		3	2.97	2010	2009.06.01.		충남 보령시	X
15	000		3	4.17	2010	2009.03.09.		전남 담양군	○
16	000		3	2.89	2010	2008.12.29.		경기 남양주	X
17	000		3	3.33	2010	2008.10.24.		전남 장성군	X
18	000		3	3.06	2010	2008.03.01.		서울 영등포	X
19	000		1	2.74	2011	2011.09.07.		광주 광산구	○
20	000		3	4.24	2010	2010.08.01.		서울 양천구	○
21	000		1	2.65	2011	1995.07.01.		서울 중구	X
22	000		3	3.09	2010	2011.06.01.		경기 부천시	X
23	000		3	4.36	2010	2010.09.01.		광주 서구	○
24	000		3	4.05	2010	2008.09.01.		광주 북구	X
25	000		3	4.05	2010	2002.11.02.		광주 서구	X
26	000		1	3.87	2011	2007.01.01.		전남 장성군	X
27	000		1	2.96	2011	2010.01.01.		광주	X
28	000		3	2.95	2010	2000.01.01.		경기 가평군	X
29	000		3	3.52	2010	2010.01.01.		광주	X
30	000		3	3.98	2010	2010.01.01.		담양	X
31	000		3	2.86	2010	2010.01.01.		경북 경주	X
32	000		3	3.5	2006	1995.07.01.		서울 강동구	X
33	000		2	1.17	2010	2010.11.23.		경기 고양시	X
34	000		3	2.95	2010	2011.05.25.		전남 해남군	X
35	000		1	3.57	2011	2004.02.16.		서울 광진구	○
36	000		1	3.43	2011	2011.04.15.		전남 담양군	○
37	000		1	3.32	2008	2008.02.01.		전남 담양군	○
38	000		1	3.61	2011	2010.12.01.		전남 담양군	○
39	000		1	3.7	2011	2010.06.03.		광주 광산구	○
40	000		1	1.57	2011	2011.01.20.		전남 담양군	○
41	000		1	3.96	2011	2004.10.01.		전남 담양군	○

일련 번호	성 명	학 과	이수 학기	1학기 학점	입학 연도	취업일자	직 장 명 ^{*)}	직장 소재지 (거주지)	실제정상 수료여부
42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3	4.43	2010	2011.08.0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광주 광산구	○
43	○○○		3	4.32	2010	2011.08.01.		전남 담양군	○
44	○○○		1	4	2011	2010.12.01.		전남 담양군	○
45	○○○		1	3.74	2011	2006.03.20.		전남 담양군	○
46	○○○		3	2.52	2010	2011.05.01.		전남 장성군	○
47	○○○		3	3.84	2010	2011.03.21.		경기 안양시	○
48	○○○		3	4.16	2010	2011.02.28.		전남 장성군	○
49	○○○		3	4.07	2010	2011.02.01.		전남 무안군	○
50	○○○		3	4.11	2010	2011.02.01.		광주 광산구	○
51	○○○		3	3.8	2010	2010.11.13.		전남 담양군	○
52	○○○		3	4.05	2010	2010.09.02.		전남 담양군	○
53	○○○		3	3.27	2010	2010.06.07.		전북 순창군	○
54	○○○		3	2.68	2010	2010.02.01.		전남 곡성군	○
55	○○○		3	3.2	2010	2009.10.01.		전남 고흥군	○
56	○○○		3	3.75	2010	2009.07.01.		광주 남구	○
57	○○○		3	4.3	2010	2009.07.01.		광주 동구	○
58	○○○		3	4.14	2010	2009.01.01.		전남 담양군	○
59	○○○		3	3.98	2010	2007.07.02.		전남 담양군	○
60	○○○		3	3.41	2010	2006.09.01.		광주 북구	○
61	○○○		3	4.05	2010	2002.12.01.		전남 곡성군	○
62	○○○		1	4.15	2011	2011.08.01.		광주 동구	○
63	○○○		3	2.39	2010	2009.08.20.		서울 강남구	X
64	○○○		1	3.32	2011	2010.12.21.		전북 부안군	○
65	○○○		1	3.73	2011	2005.02.01.		서울 강서구	X
66	○○○		1	3.23	2011	2000.03.21.		경기 수원시	X
67	○○○		1	3.27	2011	2011.01.16.		경기 수원시	X
68	○○○		1	3.3	2011	2004.11.15.		경기 수원시	X
69	○○○		1	3.25	2011	2011.09.01.		충남 천안시	X
70	○○○		1	3.23	2011	2003.01.02.		광주 북구	○
71	○○○		1	3.61	2011	2009.03.01.		전남 화순군	○
72	○○○		1	3.66	2011	2008.03.01.		광주 광산구	○
73	○○○		1	3.27	2011	2011.01.10.		경기 성남시	X
74	○○○		3	3.65	2010	2011.05.01.		울산 남구	X
75	○○○		3	3.7	2010	2011.03.01.		전남 순천시	○
76	○○○		3	3.6	2010	2011.02.14.		서울 광진구	X
77	○○○	3	3.7	2008	2011.02.07.	광주 북구	○		
78	○○○	3	3.65	2010	2010.11.03.	대전 유성구	X		
79	○○○	3	3.85	2010	2010.05.31.	서울 중구	X		
80	○○○	3	3.95	2010	2010.05.24.	서울 서초구	X		
81	○○○	3	3.73	2010	2010.04.01.	광주 북구	○		
82	○○○	3	3.73	2007	2010.03.23.	전남 담양군	○		
83	○○○	3	3.73	2010	2009.04.01.	광주 광산구	○		
84	○○○	3	4	2010	2007.09.14.	광주 광산구	○		
85	○○○	3	3.68	2010	2005.12.30.	전남 나주시	○		

일련 번호	성 명	학 과	이수 학기	1학기 학점	입학 연도	취업일자	직 장 명 ^{*)}	직장 소재지 (거주지)	실제정상 수료여부
86	00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3	3.83	2010	2004.01.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광주 광산구	X
87	000		1	2.55	2011	2010.07.01.		서울 중구	X
88	000		1	4.36	2011	2011.07.09.		부산 진구	○
89	000		3	2.75	2010	2010.03.01.		전남 광양시	○
90	000		3	4.15	2010	2009.01.01.		광주 동구	○
91	000		3	3.22	2010	2011.10.13.		전남 나주시	○
92	000		3	2.61	2010	2011.09.28.		광주 서구	○
93	000		3	4.17	2010	2011.09.01.		광주 남구	○
94	000		3	2.65	2010	2011.05.16.		전남 순천시	X
95	000		1	3.09	2011	2005.03.02.		광주 북구	X
96	000		1	3.04	2011	2009.02.25.		전남 신안군	X
97	000		1	3.33	2011	1997.11.28.		서울 송파구	X
98	000		1	2.72	2011	2011.09.20.		전남 화순군	X
99	000		1	3.24	2011	2006.03.25.		전남 담양군	X
100	000		1	3.33	2011	2011.01.02.		전남 담양군	X
101	000		1	2.39	2011	2009.03.01.		광주 광산구	X
102	000		1	3	2011	2010.11.01.		광주 북구	○
103	000		1	3.02	2011	2011.01.10.		광주 광산구	○
104	000		1	3.04	2011	2011.05.01.		전남 담양군	○
105	000		3	3.26	2010	2011.03.01.		전남 영암군	X
106	000		3	2.61	2010	2005.03.26.		전남 나주시	X
107	000		3	2.65	2008	1995.09.01.		광주 동구	X
108	000		3	4.21	2010	2011.06.27.		전남 화순군	○
109	000		3	3.5	2008	2011.05.30.		전북 무주군	○
110	000		3	3.59	2008	2011.05.30.		전북 무주군	○
111	000		1	2.38	2011	2011.05.01.		광주 광산구	X
112	000		1	2.77	2011	2011.01.01.		전북 익산시	○
113	000		1	3.06	2011	2006.10.11.		광주 남구	○
114	000		3	3.24	2010	2010.10.20.		전남 순천시	○
115	000	3	4.39	2010	2010.07.05.	광주 북구	○		
116	000	3	4.39	2010	2009.01.01.	전남 해남군	○		
117	000	3	2.61	2010	2001.12.30.	전남 무안군	X		
118	000	3	2.66	2010	2011.09.06.	광주 광산구	X		
119	000	3	3	2010	2011.09.01.	대전 유성구	X		
120	000	3	2.74	2010	2011.06.20.	광주 광산구	X		
121	000	3	2.97	2010	2011.03.04.	경기 오산시	X		
122	000	3	2.92	2010	2011.03.02.	경기 수원시	X		
123	000	1	3.05	2011	2010.10.01.	경기 성남시	X		
124	000	1	3	2011	1995.07.01.	광주 광산구	X		
125	000	1	3.1	2011	2011.01.03.	서울 성북구	X		
126	000	1	2.9	2011	2004.06.01.	대전 서구	X		
127	000	1	3	2011	2011.02.01.	경기 수원시	X		
128	000	1	3.14	2011	2010.08.05.	광주 북구	X		
129	000	1	3.1	2011	2011.02.01.	광주 북구	X		

일련 번호	성 명	학 과	이수 학기	1학기 학점	입학 연도	취업일자	직 장 명 ^{*)}	직장 소재지 (거주지)	실제정상 수료여부
130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1	3.1	2011	2003.10.2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경기 용인시	X
131	○○○		1	3	2011	1995.07.01.		대전 대덕구	X
132	○○○		1	3.81	2011	2011.03.14.		광주 광산구	X
133	○○○		1	3	2011	2009.12.24.		대전 서구	X
134	○○○		3	3.08	2010	2011.02.01.		광주 북구	X
135	○○○		5	3.13	2009	2011.06.17.		경기 화성시	X
136	○○○		5	3.15	2009	2011.04.21.		대전 동구	X
137	○○○		5	3.15	2009	2010.12.09.		경기 남양주	X
138	○○○		5	2.94	2009	2010.06.20.		대전 중구	X
139	○○○		5	3.15	2009	2010.02.01.		대전 유성구	X
140	○○○		5	2.94	2009	2009.09.07.		경기 남양주	X
141	○○○		5	3.09	2009	2009.09.01.		서울 광진구	X
142	○○○		5	3.05	2009	2008.12.01.		경기 광주시	X
143	○○○		5	3.09	2009	2007.03.01.		서울 마포구	X
144	○○○		3	2.92	2010	2010.06.21.		전북 전주시	X
145	○○○		3	2.66	2010	2010.03.01.		충남 당진군	X
146	○○○		3	2.66	2010	2009.07.01.		대전 대덕구	X
147	○○○		3	3.08	2010	2009.04.01.		경기 수원시	X
148	○○○		3	2.74	2010	2009.03.01.		충남 당진군	X
149	○○○		3	2.74	2010	2009.03.01.		광주 북구	X
150	○○○		3	3.08	2010	2008.09.01.		대전 서구	X
151	○○○		3	3.39	2011	2008.07.01.		경남 사천시	X
152	○○○		3	2.74	2010	2008.05.06.		광주 북구	X
153	○○○		3	2.66	2010	2006.11.01.		충남 당진군	X
154	○○○		3	3.53	2010	2006.04.01.		대전 중구	X
155	○○○		3	2.66	2010	2005.06.01.		광주 동구	X
156	○○○		3	3.33	2008	2011.05.12.		경북 구미시	○
157	○○○		2	3.83	2008	2011.07.11.		경기 평택시	○
158	○○○		3	2.67	2005	2010.07.01.		경기 동두천	○
159	○○○		3	2.42	2006	2010.05.10.		전남 광양시	○
160	○○○		3	2.33	2010	2009.11.01.		경남 밀양시	X
161	○○○		3	2.48	2010	2009.05.06.		충남 공주시	X
162	○○○		3	2.33	2010	1996.09.30.		서울 서초구	X
163	○○○		3	2.33	2010	1995.07.01.		서울 서초구	X
164	○○○		1	2.88	2011	2006.07.01.		전남 순천시	X
165	○○○		3	4.16	2010	2011.05.16.		경기 수원시	○
166	○○○		3	4.11	2008	2011.05.12.		경북 구미시	○
167	○○○		3	3.25	2010	2011.09.16.		전남 광양시	○
168	○○○		3	3.5	2010	2011.08.01.		전남 곡성군	○
169	○○○		3	3.33	2010	2011.04.01.		전남 담양군	○
170	○○○		3	3.25	2010	2010.10.25.		전남 구례군	X
171	○○○		3	4.42	2010	2010.10.13.		경기 화성시	X
172	○○○		3	4.42	2010	2010.10.13.		경기 화성시	X
173	○○○	3	3.33	2010	2010.10.01.	경기 포천군	X		

일련 번호	성 명	학 과	이수 학기	1학기 학점	입학 연도	취업일자	직 장 명 ^{*)}	직장 소재지 (거주지)	실제경상 수료여부
174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1	4.33	2011	2005.10.1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광주시 북구	○
175	○○○		1	3.67	2011	2006.06.01.		경기 안양시	X
176	○○○		1	4.33	2011	2011.09.14.		인천 남구	X
177	○○○		1	3.75	2011	2009.03.12.		전남 담양군	○
178	○○○		1	4.08	2011	2011.03.14.		서울 송파구	X
179	○○○		1	3.25	2011	2011.08.01.		광주 서구	○
180	○○○		1	4.08	2011	2009.10.05.		광주 북구	○
181	○○○		1	4.42	2011	2011.04.25.		광주 광산구	○
182	○○○		1	3.25	2011	2010.07.19.		경기 성남시	X
183	○○○		1	4.33	2011	2010.08.02.		경기 성남시	X
184	○○○		1	4.08	2011	2010.12.01.		전남 나주시	○
185	○○○		1	4.08	2011	2009.09.04.		서울 송파구	X
186	○○○		1	4.33	2011	2007.05.15.		광주시 북구	○
187	○○○		1	4.42	2011	2010.02.01.		광주 서구	○
188	○○○		3	3.25	2010	2009.05.23.		광주 북구	○
189	○○○		3	4.42	2010	2007.11.01.		경기 용인시	○
190	○○○		3	3.33	2010	2007.06.01.		전남 화순군	X
191	○○○		3	4	2010	2007.05.10.		전남 신안군	○
192	○○○		3	3.83	2010	2006.02.16.		경기 성남시	X
193	○○○		1	3.25	2011	2010. 10.		인천서구	X
194	○○○		1	4.33	2011	1990.01.01.		인천	X
195	○○○		3	3.55	2010	2011.06.01.		광주 동구	X
196	○○○		3	3.64	2010	2011.05.01.		광주 서구	X
197	○○○		3	3.45	2010	2011.03.02.		전북 임실군	X
198	○○○		3	3.45	2007	2011.03.02.		전북 김제시	X
199	○○○		3	3.14	2010	2011.03.01.		전북 남원시	X
200	○○○		3	3.45	2010	2011.03.01.		경북 상주시	X
201	○○○	3	3.55	2010	2011.02.16.	경기 화성시	X		
202	○○○	3	3.55	2010	2010.10.17.	전남 나주시	X		
203	○○○	3	3.05	2010	2010.08.18.	서울 서초구	X		
204	○○○	3	3.45	2010	2010.08.07.	광주 광산구	X		
205	○○○	3	3.05	2010	2010.04.01.	전남 장성군	X		
206	○○○	3	3.05	2010	2010.04.01.	전남 영암군	X		
207	○○○	3	3.5	2010	2010.04.01.	전북 고창군	X		
208	○○○	3	3.64	2010	2010.03.01.	충남 보령시	X		
209	○○○	3	3.45	2010	2010.02.01.	광주 북구	X		
210	○○○	1	3	2011	2011.03.01.	전북 전주시	X		
211	○○○	1	3.5	2011	1997.06.16.	경기 이천시	X		
212	○○○	1	3	2011	2000.03.21.	광주 북구	X		
213	○○○	1	3.54	2011	2010.04.12.	경기 용인시	X		
214	○○○	3	3.14	2010	2009.10.01.	전북 남원시	X		
215	○○○	3	3.5	2010	2009.09.20.	전남 순천시	X		
216	○○○	1	3.5	2011	2011.02.24.	전남 장흥군	X		
217	○○○	1	2.93	2011	2008.05.07.	서울 양천구	X		

일련 번호	성 명	학 과	이수 학기	1학기 학점	입학 연도	취업일자	직 장 명 ^{*)}	직장 소재지 (거주지)	실제정상 수료여부
218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1	3.5	2011	2011.03.0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광주 서구	X
219	○○○		1	3.57	2011	2011.01.03.		대전 유성구	X
220	○○○		1	3.33	2011	2008.07.25.		전남 함평군	X
221	○○○		1	3.2	2011	1995.07.01.		서울 중구	X
222	○○○		1	3.57	2011	2008.01.04.		대전 유성구	X
223	○○○		1	3.5	2011	2008.01.25.		광주 동구	X
224	○○○		1	2.93	2011	2010.08.25.		전남 고흥군	X
225	○○○		1	3.63	2011	2007.02.12.		전남 여수시	X
226	○○○		1	3.5	2011	2008.04.24.		광주 서구	X
227	○○○		1	2.93	2011	2001.03.02.		전남 화순군	X
228	○○○		3	3.45	2010	2009.01.01.		경기 안양시	X
229	○○○		3	3.45	2010	2009.01.01.		경기 안양시	X
230	○○○		1	3.57	2011	2011.01.03.		대전 유성구	X
231	○○○		1	3.5	2011	2008.07.01.		전남 담양군	X
232	○○○		1	3.17	2011	2011.06.01.		서울 영등포	X
233	○○○		3	3.45	2010	2008.11.05.		전남고흥군	X
234	○○○		1	3.11	2011	2011.01.10.		전남 장흥군	X
235	○○○		1	3.07	2011	2008.07.01.		경기 부천시	X
236	○○○		1	3.63	2011	2007.03.21.		경기 용인시	X
237	○○○		1	3.07	2011	2010.03.19.		전북 순창군	X
238	○○○		1	3.5	2011	1997.06.02.		광주 북구	X
239	○○○		1	3.5	2011	2010.03.19.		전북 고창군	X
240	○○○		1	3.5	2011	2010.03.02.		전남 담양군	X
241	○○○		1	3.52	2011	2001.12.22.		경기 양주시	X
242	○○○		1	3.52	2011	2006.12.28.		경기 양주시	X
243	○○○		1	3.5	2011	2003.01.01.		광주 북구	X
244	○○○		1	3.57	2011	2011.01.03.		대전 유성구	X
245	○○○		3	3.45	2010	2008.05.14.		광주 서구	X
246	○○○		3	3.55	2010	2008.01.21.		경기 수원시	X
247	○○○		3	3.55	2010	2007.08.01.		대전 서구	X
248	○○○		3	3.45	2010	2007.07.10.		서울 중구	X
249	○○○	3	3.05	2010	2007.07.01.	전북 전주시	X		
250	○○○	3	3.5	2007	2007.04.16.	서울 구로구	X		
251	○○○	3	3.59	2010	2004.10.01.	충남 아산시	X		
252	○○○	3	3.64	2010	1998.03.01.	전남 함평군	X		
253	○○○	1	3.57	2011	1997.04.24.	경기 양주시	X		
254	○○○	1	2.93	2011	2008. 10.	광주정읍	X		
255	○○○	1	2.93	2011	2004.01.01.	서울	X		
256	○○○	1	2.93	2011	-	(광주 광산구)	X		
257	○○○	1	3.07	2011	2011. 04.	인천 연수구	X		
258	○○○	1	3	2011	2010.01.01.	서울	X		
259	○○○	1	3.43	2011	2000.06.08.	대전	X		
260	○○○	2	3.39	2009	2008. 10.	서울 성북구	X		
261	○○○	2	3.6	2010	2010. 7.	경기 일산시	X		

일련 번호	성 명	학 과	이수 학기	1학기 학점	입학 연도	취업일자	직 장 명 ^{주)}	직장 소재지 (거주지)	실제정상 수료여부
262	00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2	3.46	2010	2006.02.0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대전	X
263	000		2	3.28	2010	1991. 1		경기 광명시	X
264	000		3	4.27	2010	2010.09.01.		광주 동구	○
265	000		3	3.27	2010	2009.10.15.		광주 서구	○
266	000		3	3.09	2010	2008.11.01.		광주 서구	○
267	000		3	3.59	2010	2008.08.25.		광주 동구	○
268	000		1	3.5	2011	2011.09.22.		광주 북구	X
269	000		1	3.38	2011	2010.05.01.		인천 부평구	○
270	000		1	4.21	2011	2011.09.05.		광주 북구	X
271	000		1	3.42	2011	2011.08.01.		서울 은평구	X
272	000		1	3.44	2011	2011.04.12.		서울 강남구	X
273	000		3	2.93	2010	2004.01.02.		전남 담양군	X
274	000		3	3.1	2010	2011.05.16.		광주 서구	○
275	000		3	3	2010	2008.02.01.		전북 남원시	○
276	000		3	3.52	2010	2011.08.01.		전남 고흥군	○
277	000		3	3.74	2010	2011.07.01.		전남 여수시	X
278	000		3	3.83	2010	2011.05.16.		광주시 북구	X
279	000		3	3.6	2010	2011.02.01.		전남 진도	X
280	000		3	2.81	2010	2011.01.01.		광주 광산구	○
281	000		3	2.74	2010	2010.04.01.		전북 고창군	X
282	000		3	3.74	2010	1995.07.01.		전남 여수시	X
283	000		1	2.75	2011	2011.09.07.		광주 광산구	○
284	000		1	3.29	2011	2010.07.14.		전남 순천시	○
285	000		1	3.21	2011	2011.08.17.		광주 광산구	○
286	000		1	3.21	2011	2004.01.29.		전남 광양시	X
287	000		1	3.15	2011	2010.02.01.		광주 동구	○
288	000		1	3.17	2011	2007.06.01.		광주 서구	○
289	000		3	2.55	2006	2011.03.01.		광주 서구	X
290	000		3	2.55	2010	2010.12.01.		광주 서구	X
291	000		3	2.98	2010	2009.07.14.		전남 여수시	X
292	000		1	2.4	2011	2011.03.01.		대전 서구	X
293	000		1	2.44	2011	2008.11.17.		경기 안성시	X
294	000		4	2.82	2006	2010.11.01.		경기 안양시	X
295	000	3	2.55	2010	2005.09.26.	전남 영암군	X		
296	000	3	3.48	2010	2011.02.16.	서울 영등포	X		
297	000	3	3.07	2010	2010.04.26.	전남 영암군	X		
298	000	3	2.93	2010	2008.10.13.	광주 동구	X		
299	000	3	2.91	2009	2007.01.05.	전남 장흥군	X		
300	000	3	2.93	2010	2003.03.03.	서울 구로구	X		
301	000	3	3.64	2010	1998.01.01.	전남 여수시	X		
302	000	3	3.64	2010	1998.01.01.	전남 여수시	X		
303	000	3	3.64	2010	1998.01.01.	전남 여수시	X		

주) 직장명은 한국고용정보원에 등록된 회사명을 그대로 인용하였음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2]

수업시간 수가 부족한 ●●●●과 학생에 대한 부당 성적처리 명세

일련 번호	성명	입학 연도	2011년 1학기		취업일자	직장명	직장 소재지 (거주지)	원거리학생 대상여부
			이수과목	학점				
1	○○○	2011		3.57	1997.04.24.		경기 양주시	0
2	○○○	2011		2.93	2008. 10.		광주정읍	0
3	○○○	2011		2.93	2004.01.01.		서울	0
4	○○○	2011		2.93	-		(광주 광산구)	0
5	○○○	2011		3.07	2011. 04.		인천 연수구	0
6	○○○	2011		3	2010.01.01.		서울	0
7	○○○	2011		3.43	2000.06.08.		대전	0
8	○○○	2011		3	2011.03.01.		전북 전주시	
9	○○○	2011		3.5	1997.06.16.		경기 이천시	0
10	○○○	2011		3	2000.03.21.		광주 북구	
11	○○○	2011		3.54	2010.04.12.		경기 용인시	0
12	○○○	2011		3.5	2011.02.24.		전남 장흥군	
13	○○○	2011		2.93	2008.05.07.		서울 양천구	0
14	○○○	2011		3.5	2011.03.01.		광주 서구	
15	○○○	2011		3.57	2011.01.03.		대전 유성구	0
16	○○○	2011		3.33	2008.07.25.		전남 함평군	
17	○○○	2011	⊗⊗⊗⊗ 등	3.2	1995.07.01.		서울 중구	0
18	○○○	2011	10개 과목 (23학점)	3.57	2008.01.0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대전 유성구	0
19	○○○	2011		3.5	2008.01.25.		광주 동구	
20	○○○	2011		2.93	2010.08.25.		전남 고흥군	
21	○○○	2011		3.63	2007.02.12.		전남 여수시	
22	○○○	2011		3.5	2008.04.24.		광주 서구	
23	○○○	2011		2.93	2001.03.02.		전남 화순군	
24	○○○	2011		3.57	2011.01.03.		대전 유성구	0
25	○○○	2011		3.5	2008.07.01.		전남 담양군	
26	○○○	2011		3.17	2011.06.01.		서울 영등포	0
27	○○○	2011		3.11	2011.01.10.		전남 장흥군	
28	○○○	2011		3.07	2008.07.01.		경기 부천시	0
29	○○○	2011		3.63	2007.03.21.		경기 용인시	0
30	○○○	2011		3.07	2010.03.19.		전북 순창군	
31	○○○	2011		3.5	1997.06.02.		광주 북구	
32	○○○	2011		3.5	2010.03.19.		전북 고창군	
33	○○○	2011		3.5	2010.03.02.		전남 담양군	
34	○○○	2011		3.52	2001.12.22.		경기 양주군	0

일련 번호	성명	입학 연도	2011년 1학기		취업일자	직장명	직장 소재지 (거주지)	원거리학생 대상여부
			이수과목	학점				
35	○○○	2011		3.52	2006.12.28.		경기 양주시	0
36	○○○	2011		3.5	2003.01.01.		광주 북구	
37	○○○	2011		3.57	2011.01.03.		대전 유성구	0
38	○○○	2010		3.28	1991. 01.		경기 광명시	0
39	○○○	2010		3.6	2010. 07.		경기 일산시	0
40	○○○	2010		3.46	2006.02.09.		대전	0
41	○○○	2010		3.45	2011.03.02.		전북 임실군	0
42	○○○	2010		3.05	2010.04.01.		전남 장성군	
43	○○○	2010		3.45	2009.01.01.		경기 안양시	0
44	○○○	2010		3.45	2008.05.14.		광주 서구	
45	○○○	2010		3.55	2011.06.01.		광주 동구	0
46	○○○	2010		3.45	2009.01.01.		경기 안양시	0
47	○○○	2010		3.14	2009.10.01.		전북 남원시	
48	○○○	2010		3.55	2008.01.21.		경기 수원시	0
49	○○○	2010		3.59	2004.10.01.		충남 아산시	0
50	○○○	2010		3.5	2009.09.20.		전남 순천시	
51	○○○	2010		3.05	2010.04.01.		전남 영암군	
52	○○○	2010		3.05	2010.08.18.		서울 서초구	0
53	○○○	2010	○○○○ 등 10개 과목 (22학점)	3.45	2007.07.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서울 중구	
54	○○○	2010		3.64	2011.05.01.		광주 서구	
55	○○○	2010		3.45	2010.02.01.		광주 북구	
56	○○○	2010		3.64	1998.03.01.		전남 함평군	
57	○○○	2010		3.14	2011.03.01.		전북 남원시	
58	○○○	2010		3.45	2010.08.07.		광주 광산구	
59	○○○	2010		3.64	2010.03.01.		충남 보령시	0
60	○○○	2010		3.55	2010.10.17.		전남 나주시	
61	○○○	2010		3.45	2011.03.01.		경북 상주시	
62	○○○	2010		3.55	2007.08.01.		대전 서구	0
63	○○○	2010		3.05	2007.07.01.		전북 전주시	
64	○○○	2010		3.5	2010.04.01.		전북 고창군	
65	○○○	2010		3.55	2011.02.16.		경기 화성시	0
66	○○○	2010		3.45	2008.11.05.		전남 고흥군	
67	○○○	2009		3.39	2008. 10.		서울 성북구	0
68	○○○	2007		3.5	2007.04.16.		서울 구로구	0
69	○○○	2007		3.45	2011.03.02.		전북 김제시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3]

수업에 불참한 ●●●●●●과 학생에 대한 부당 성적처리 명세

일련 번호	성명	입학 연도	2011년 1학기		취업일	직장명	직장 소재지
			이수과목	학점			
1	○○○	2011	○○○○ 등 9개 과목 (22학점)	2.91	2003.07.0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경기 광명시
2	○○○	2011		3.11	2007.04.01.		서울 양천구
3	○○○	2011		2.95	2008.06.01.		전남 담양군
4	○○○	2011		2.95	1995.07.01.		경기 수원시
5	○○○	2011		2.95	1995.07.01.		경기 수원시
6	○○○	2011		2.95	1995.07.01.		경기 수원시
7	○○○	2011		2.95	2006.12.27.		전남 담양군
8	○○○	2011		2.91	2009.10.12.		경기 성남시
9	○○○	2011		2.91	2011.07.01.		서울 서초구
10	○○○	2011		2.91	2002.04.29.		광주 광산구
11	○○○	2010	●●●●● 등 8개 과목 (18학점)	3.11	2011.05.01.	광주 북구	
12	○○○	2010		2.97	2010.02.11.	충남 보령시	
13	○○○	2010		3.08	2009.07.01.	전북 전주시	
14	○○○	2010		2.97	2009.06.01.	충남 보령시	
15	○○○	2010		2.89	2008.12.29.	경기 남양주	
16	○○○	2010		3.33	2008.10.24.	전남 장성군	
17	○○○	2010		3.06	2008.03.01.	서울 영등포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4]

수업시간 수가 부족한 ○○○○과 학생에 대한 부당 성적처리 명세

일련 번호	성명	입학 연도	2011년 1학기		취업일 ^{주)}	직장명	직장 소재지
			이수과목	학점			
1	○○○	2011	○○○○○ 등 8개 과목 (21학점)	3.1	2011.01.0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서울 성북구
2	○○○	2011		3.05	2010.10.01.		경기 성남시
3	○○○	2011		3	1995.07.01.		광주 광산구
4	○○○	2011		2.9	2004.06.01.		대전 서구
5	○○○	2011		3	2011.02.01.		경기 수원시
6	○○○	2011		3.14	2010.08.05.		광주 북구
7	○○○	2011		3.1	2011.02.01.		광주 북구
8	○○○	2011		3.1	2003.10.27.		경기 용인시
9	○○○	2011		3	1995.07.01.		대전 대덕구
10	○○○	2011		3.81	2011.03.14.		광주 광산구
11	○○○	2011		3	2009.12.24.		대전 서구
12	○○○	2011		3.39	2008.07.01.		경남 사천시
13	○○○	2010		2.66	2011.09.06.		광주 광산구
14	○○○	2010	3	2011.09.01.	대전 유성구		
15	○○○	2010	2.74	2011.06.20.	광주시 광산구		
16	○○○	2010	2.97	2011.03.04.	경기 오산시		
17	○○○	2010	2.92	2011.03.02.	경기 수원시		
18	○○○	2010	3.08	2011.02.01.	광주 북구		
19	○○○	2010	2.92	2010.06.21.	전북 전주시		
20	○○○	2010	2.66	2010.03.01.	충남 당진군		
21	○○○	2010	2.66	2009.07.01.	대전 대덕구		
22	○○○	2010	3.08	2009.04.01.	경기 수원시		
23	○○○	2010	2.74	2009.03.01.	충남 당진군		
24	○○○	2010	2.74	2009.03.01.	광주 북구		
25	○○○	2010	3.08	2008.09.01.	대전 서구		
26	○○○	2010	2.74	2008.05.06.	광주 북구		
27	○○○	2010	2.66	2006.11.01.	충남 당진군		
28	○○○	2010	3.53	2006.04.01.	대전 중구		
29	○○○	2010	2.66	2005.06.01.	광주 동구		
30	○○○	2009	3.13	2011.06.17.	경기 화성시		
31	○○○	2009	3.15	2011.04.21.	대전 동구		
32	○○○	2009	3.15	2010.12.09.	경기 남양주시		
33	○○○	2009	2.94	2010.06.20.	대전 중구		
34	○○○	2009	3.15	2010.02.01.	대전 유성구		
35	○○○	2009	2.94	2009.09.07.	경기 남양주시		
36	○○○	2009	3.09	2009.09.01.	서울 광진구		
37	○○○	2009	3.05	2008.12.01.	경기 광주시		
38	○○○	2009	3.09	2007.03.01.	서울 마포구		
			○○○○○ 등 7개 과목 (19학점)	2.66	2010.03.01.		
				2.66	2009.07.01.		
				3.08	2009.04.01.		
				2.74	2009.03.01.		
				2.74	2009.03.01.		
				3.08	2008.09.01.		
				2.74	2008.05.06.		
				2.66	2006.11.01.		
				3.53	2006.04.01.		
				2.66	2005.06.01.		
			○○○○○ 등 8~9개 과목 (19~22학점)	3.13	2011.06.17.		
				3.15	2011.04.21.		
				3.15	2010.12.09.		
				2.94	2010.06.20.		
				3.15	2010.02.01.		
				2.94	2009.09.07.		
				3.09	2009.09.01.		
				3.05	2008.12.01.		
				3.09	2007.03.01.		

주) 취업일은 현 직장의 취업일이며 최초 취업일이 아님(예: ○○○의 경우 2007. 11. 1.부터 보육교사로 근무)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5]

수업시간 수가 부족한 ○○○○과 학생에 대한 부당 성적처리 명세

일련 번호	성명	입학 연도	2011년 1학기		취업일자	직 장 명	직장 소재지
			이수과목	학점			
1	○○○	2011	○○○ 개론 등 11개 과목 (23학점)	3.87	2007.01.0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전남 장성
2	○○○	2011		2.65	1995.07.01.		서울 중구
3	○○○	2011		2.96	2010.01.01.		광주광역시
4	○○○	2010	◇◇◇◇◇ 등 11개 과목 (22학점)	4.05	2002.11.02.		광주 서구
5	○○○	2010		3.09	2011.06.01.		경기 부천시
6	○○○	2010		4.05	2008.09.01.		광주 북구
7	○○○	2010		2.86	2010.01.01.		경북 경주
8	○○○	2010		2.95	2000.01.01.		경기 가평
9	○○○	2010		3.52	2010.01.01.		광주광역시
10	○○○	2010		3.98	2010.01.01.		전남 담양
11	○○○	2006		3.5	1995.07.01.		서울 강동구

주1) 1학년의 경우 총 수업시간이 390시간이고, 야간반과 주말반 수업을 모두 출석하여도 82시간(21%)

2) 2학년의 경우 총 수업시간이 405시간이고, 야간반과 주말반 수업을 모두 출석하여도 82시간(20%)

※ 야간반과 주간반 수업은 1, 2학년 공동 수업 실시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6]

취업하여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 현황(경남도립거창대학)

학생 성명	학과명	입학연도	과목명	취업일자	직장 소재지	직장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20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2011. 4.19.	경상남도 거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		2006		2010. 7.13.	경상북도 구미시	
○○○		2010		2011. 4.19.	경상남도 거제시	
○○○		2010		2011. 2. 1.	부산광역시 동구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7]

프로젝트 과목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출석처리 및 학점 부여 현황(경북도립대학)

성명	취업일자	직장 소재지	직장명	출석처리 및 학점 부여	
				결석일수	학점
○○○	2009. 5. 1.	강원도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출석일수의 1/4 이상	A
○○○	2011. 4.17.	경기도 안양시		"	A
○○○	2006.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	B
○○○	2008.11.17.	경기도 수원시		"	B
○○○	2009.12. 1.	경상북도 경주시		"	A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8]

☒☒☒☒과 취업자의 2011학년도 1학기 성적 부여 명세(충북도립대학)

일련 번호	성명	취업일	직장명 (소재지)	교과목	교과목 평균학점
1	○○○	2010. 12. 1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2.65
2	○○○	2010. 01. 20.			2.65
3	○○○	2011. 04. 11.			2.64
4	○○○	2011. 01. 18.			2.73
5	○○○	2011. 04. 01.			2.73
6	○○○	2011. 05. 01.			3.15
7	○○○	2011. 02. 23			2.78
8	○○○	2011. 05. 12.			3.23
9	○○○	2011. 05. 12.			3.33
10	○○○	2011. 04. 05.			2.85
11	○○○	2011. 04. 25.			3.13
12	○○○	2011. 04. 25.			3.13

자료: 감사대상기관 감사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학과 육성사업비 횡령 및 사업비 인장관리 태만

소 관 청 인천광역시

관 계 기 관 인천대학교

징계 대상자 ① 인천대학교 ◇◇◇◇◇◇◇대학 ◆◆학부
교조 ○○○

② 인천대학교 ◇◇◇◇◇◇◇대학 ◆◆학부
교수 ※※※

징 계 종 류 ① ○○○(파면) ② ※※※(정직)

징 계 사유

위 사람들 중 ○○○은 2008. 9. 1.부터 2011. 12. 20. 현재까지 위 대학교 위 직에서 위 대학교 기획예산과(현 기획조정과)¹⁾에서 주관한 자체 연구사업인 2009년도 중점학과 육성사업²⁾과 2010년도 통합학과 지원사업³⁾ 연구책임자의 보조자로서 사업비 입출금업무를 담당하였고, ※※※은 2009. 9. 10.부터 2010. 2. 28.까지 위 대학교 위 직에서 2009년도 중점학과 육성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위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의 경우

1) 2010. 7. 28.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조정과로 변경

2) 위 대학교의 단과 대학 중 소수의 중점학과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를 그 재원으로 함

3) 위 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이 통합되면서 통합되는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서 인천대학교 기성회회계를 그 재원으로 함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⁴⁾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관리지침」 ‘9. 연구비의 사용’의 규정에 따르면 자체연구비는 연구계획서에 기재한 연구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연구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고 연구비 사용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책임자의 보조자인 위 사람은 중점학과 육성사업과 통합학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실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위 사업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 반납조치하여야 하고, 집행잔액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위 사업비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09. 12. 31. 중점학과 육성사업 종료 후 위 사업비 집행잔액 10,368,020원⁵⁾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학과⁶⁾장이었던 ∇∇∇에게 문의하여 ∇∇∇으로부터 “위 금액 중 60,720원만 반납하고, 10,307,300원은 반납하지 말고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위 사람은 2009년 12월 말(정확한 날짜 모름) ∇∇∇이 지시한 대

4)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는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천대학교 기성회계는 「인천대학교 기성회계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5) 위 중점학과 육성사업의 세부사업인 중견통상인력양성사업 집행잔액 계 10,307,300원 + 교수연구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 계 60,720원

6) 2010. 3. 1. 인천대학교 ◆◆학과와 인천전문대학 ◆◆과, ∇-○○○○과가 통합되면서 ◇◇◇◇◇◇대학 ◆◆학부로 개편되었음

로 60,720원만 반납하는 내용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7) ∇∇∇에게 결재받은 후 2010. 1. 8. 정산 결과 문서를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 계 10,307,300원은 ◆◆학부에서 상조회비 등을 관리하는 농협중앙회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위 사람은 인천대학교 △△중앙회 출장소 지점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학과장의 인장을 이용하여 예금인출청구서에 ◆◆학과장의 인장을 무단으로 찍는 방법으로 2010. 1. 6. 위 상조회비 계좌에서 10,260,800원⁸⁾을 자신의 계좌(농협)로 이체한 다음 그 중 8,579,800원⁹⁾은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결제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통합학과 지원사업비 65,000,000원 중 [별표] “통합학과 지원사업비 현금 인출 명세”와 같이 2010. 11. 5.부터 같은 해 12. 9.사이 4회에 걸쳐 위 통합학과 지원사업비 관리 계좌(농협)에서 계 1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결제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최장 153일간 사용한 후 2011. 4. 7. 계 12,000,000원을 다시 위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같은 해 4. 26. 위 통합학과 지원사업 집행잔액(6,398,320원) 반납 시 기획조정과로 반납하였다.

2. ※※※의 경우

7) 중점학과 육성사업 중 중견통상인력양성사업 참가학생 인턴십 및 박람회 참가여비 등으로 편성된 17,000,000원 중 계 10,307,300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위 여비 등을 전액 집행한 것처럼 실제와 다른 정산보고서를 제출

8) 중점학과 육성사업 미집행사업비 10,307,300원 중 위 사업 명함제작비로 사용한 46,500원을 제외한 금액임

9) ◎◎◎이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10,260,800원 중 1,681,000원은 각각 2010. 1. 11., 2010. 3. 30. ∇∇∇의 지시에 따라 해외건학우수팀 상금(700,500원) 및 ∇∇∇이 출간한 책자 구입비용(980,500원)으로 위 중점학과 육성사업 예산 집행계획과는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

위 사람은 중점학과 육성사업을 총괄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실대로 집행잔액을 보고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학과장 인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등으로 위 사업비 집행잔액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09년 12월 말(정확한 날짜 모름) ○○○에게 위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10,368,020원이 발생하였는데도 60,720원만 반납하고, 10,307,300원¹⁰⁾은 반납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이에 ○○○이 위 사람에게 지시받은 대로 60,720원만 반납하는 내용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자 이를 그대로 결재한 후 2010. 1. 8. 위 문서를 기획예산과로 제출하게 하였으며 ◆◆학과장의 인장도 자신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이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위 사람은 ○○○에게 지시하여 2010. 1. 11.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상금비용으로 700,500원, 같은 해 3. 30. 자신이 출간한 책자 구입비용 980,500원을 지출하도록 하는 등 계 1,681,000원을 위 중점학과 육성사업의 예산집행계획과는 다르게 부당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이 ◆◆학과장의 인장을 무단으로 찍는 방법으로 2010. 1. 6. 위 중점학과 육성사업비 관리 계좌에서 계 10,260,800원을

10) 위 ○○○의 진술에 따르면 중점학과 육성사업 중 세부사업인 중견통상인력양성사업의 국내외 업체 견학 및 박람회 참가여비로 편성되었던 17,000,000원 중 2009. 12. 28. 당시 위 사업 연구책임자였던 ∇∇∇의 지시에 따라 항공료와 체재비를 참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학교 당국에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12. 30. ∇∇∇이 참가학생의 항공료만 지원하고 체재비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내려 위 집행잔액 10,307,300원이 발생하였다고 진술

ⓒⓒⓒ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8,579,800원을 신용카드대금 결제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2010년 2월 말에 추가로 ◆◆학부 학생들의 해외탐방을 보내려고 중점학과 육성사업 집행잔액 10,307,300원을 반납하지 말고 보관하도록 ⓒⓒⓒ에게 지시하였다고 변명하나 위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학부 학생들의 해외탐방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1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반납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 변명은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인천대학교 총장은 위 사람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통합학과 지원사업비 현금 인출 명세

(단위 : 원)

연번	인출일자	인출액	인출계좌
1	2010. 11. 5.	5,000,000	-
2	2010. 11. 16.	2,000,000	-
3	2010. 11. 26.	2,000,000	-
4	2010. 12. 9.	8,000,000	-
합계		17,000,000	사업비를 인출하여 대부분 신용카드대금 결제비용으로 사용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고 발

제 목 중점학과 육성사업비 등 횡령

피 고 발 인 성 명 :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근무처 : 인천대학교 ◇◇◇◇◇◇◇대학 ◆◆학부(조교)

고 발 건 명 횡령

고 발 사 실

위 사람은 2008. 9. 1.부터 2011. 12. 20. 현재까지 인천대학교 ◇◇◇◇◇◇◇
◇대학 ◆◆학부 조교로 근무하면서 위 대학교 기획예산과(현 기획조정과)에서
주관한 자체 연구사업인 2009년도 중점학과 육성사업과 2010년도 통합학과 지원
사업 연구책임자의 보조자로서, 사업비 입출금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¹⁾의 규정에 따르면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관리지침」 '9. 연구비의 사용'의 규정에 따르면
자체연구비는 연구계획서에 기재한 연구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
책임자는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연구비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고 연구비 사용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1) 중점학과 육성사업비는 '인천대학교 특별회계'를, 통합학과 지원사업비는 '인천대학교 기성회회계'를 각각 그 재원으로 하고 있는바 그중 '인천대학교 특별회계'는 「인천대학교 운영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인천대학교 기성회회계'는 「인천대학교 기성회회계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연구책임자의 보조자인 위 사람은 위 대학교에서 위 ◆◆학부에 지급한 중점학과 육성사업비와 통합학과 지원사업비를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09. 12. 31. 위 중점학과 육성사업 종료 후 위 대학교에 반납하여야 할 사업비 집행잔액 10,307,300원을 반납하지 아니하고²⁾, 2010. 1. 6. 위 집행잔액 중 10,260,800원을 자신의 계좌(△△중앙회)로 이체한 다음 그 중 8,579,800원은 신용카드대금 결제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통합학과 지원사업비 65,000,000원 중 [별표] “통합학과 지원사업비 현금 인출 명세”와 같이 2010. 11. 5.부터 같은 해 12. 9.사이 4회에 걸쳐 통합학과 지원사업비 관리 계좌(△△중앙회)에서 계 1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용카드대금 결제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최장 153일간 사용하다가 그 중 12,000,000원은 2011. 4. 7. 다시 위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5,000,000원은 같은 해 4. 26. 통합학과 지원사업 집행잔액(6,398,320원) 반납 시 기획조정과로 반납하였다.

이와 같이 위 사람은 ◆◆학부 지원사업비 관리계좌 등에서 25,579,800원³⁾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금액을 자신의 신용카드대금 결제비용, 개인 이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형법」 제 355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있다.

2) 위 사람이 위 중점학과 육성사업 집행잔액 10,307,300원을 반납하지 아니한 것은 위 중점학과 육성사업 연구책임자인 ∇∇∇이 학생들의 추가해외탐방으로 보내기 위해 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

3) 중점학과 육성사업비 중 위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 8,579,800원 + 통합학과 지원사업비 중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 17,000,000원

[별표]

통합학과 지원사업비 현금 인출 명세

(단위 : 원)

연번	인출일자	인출액	인출계좌
1	2010. 11. 5.	5,000,000	-
2	2010. 11. 16.	2,000,000	-
3	2010. 11. 26.	2,000,000	-
4	2010. 12. 9.	8,000,000	-
합계		17,000,000	사업비를 인출하여 대부분 신용카드대금 결제비용으로 사용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중점학과 육성사업비 등 정산 및 인장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인천광역시

관 계 기 관 인천대학교

내 용

인천대학교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선도학과 육성 등을 목표로 2009년도에는 중점학과 육성사업과 2010년도에는 통합학과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1. 중점학과 육성사업비 정산 부적정

위 대학교에서는 2009. 7. 17. ◇◇◇◇◇◇◇대학 ◆◆학부(이하 “◆◆학부”라 한다)를 중점학과 육성사업(사업기간: 2009. 7. 1. ~ 2009. 12. 31.) 대상학과로 선정하여 사업비 60,000,000원을 지원하고, 2010. 1. 8. 위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관리지침」 ‘9. 연구비의 사용’의 규정에 따르면 자체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 기재한 연구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연구비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지침 [별표 1] ‘자체연구비 사용 및 정산기준 내역’에 따르면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운임과 숙박비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대학교에서는 위 지침에 따라 ◆◆학부로부터 위 중점학과 육성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출결의서, 통장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징구하는 등으로 정산내용이 맞는지를 철저히 검토하여 위 사업비가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대학교에서는 위 ◆◆학부가 중점학과 육성사업 중 중견통상인력 양성사업 참가학생 인턴십 및 박람회 참가여비 등으로 편성된 17,000,000원 중 계 10,307,300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위 여비 등을 전액 집행한 것처럼 실제와 다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여비와 숙박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인정하여 정산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학부에서는 위 사업 종료 후 위 대학교에 반납하여야 할 집행잔액 계 10,307,300원을 반납하지 아니하였고, 위 집행잔액을 관리하던 조교 ◎◎◎이 위 금액 중 10,260,800원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8,579,800원을 신용카드대금 결제비용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2. 통합학과 지원사업 인장관리 부적정

위 대학교에서는 통합학과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인 ◆◆학부장이 인장을 직접 관리하고 통합학과 육성사업비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으로 위 사업비가 임의로 인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대학교에서는 ◆◆학부장의 인장을 조교 ◎◎◎이 보관하도록 하

였을 뿐만 아니라 통합학과 지원사업비 관리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 사업비를 관리하던 조교 ○○○이 ◆◆학부장의 인장을 무단으로 찍는 방법으로 2010. 11. 5.부터 같은 해 12. 9.까지 4회에 걸쳐 위 통합학과 지원사업비 관리 계좌에서 계 1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용카드대금 결제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최장 153일간 사용한 후 2011. 4. 7.에야 반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인천대학교 총장은

- ① 앞으로 각 학과에서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비 관리, 정산 및 인장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정산 및 인장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 업무 부당 처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

징계 대상자 ① 서울시립대학교 ▲▲▲▲▲학과
교수 갑
(전 ▼▼▼▼단장)

② 서울시립대학교 □□□□학부
교수 을
(전 ▼▼▼▼부단장)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갑은 2009. 3. 1.부터 2011. 4. 30.까지 위 대학교 ▼▼▼▼단장의 직위에서, 을은 2009. 7. 1.부터 2011. 8. 31.까지 부단장의 직위에서 2010. 2. 1.자로 ▼▼▼▼ 전임계약직원 2명을 채용함에 있어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산학협력단 전임계약직원 채용계획」(2010. 1. 7. 총장 ○○○ 결재)에 따르면 시험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고, 1차 서류심사는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각자가 평가항목별(심사기준: 학력, 경력, 담당직무의 수행능력 등) 점수를 부여·합산하여 순위를 산정한 뒤 상위 득점자 5명 내외를 면

접대상자로 선정하고,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당시 1차 서류심사 시 적용된 세부 채점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1차 서류심사 세부 채점기준

(단위: 점)

학력	2년제	4년제 편입	4년제	특수대학원 졸업	일반대학원 졸업
	15	20	25	2점 가산	3점 가산
경력	기본점수	산단전임	회계법인 등	일반사무직	
	10	7	10	3	
직무수행능력	기본점수	20위권 내	지방국립대	전공 합치	
	5	10	5	5	
자격증	회계사 등	기사	기능사		
	10	2	1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따라서 1차 서류심사 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 채점기준에 따라 심사위원 각자가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하여 상위 득점자 5명 내외를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2010년 1월경 위 사람들은 세부 채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차 서류심사를 하면서 세부 채점기준에 따라 각자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은 채 ∇∇∇∇∇ 총괄팀장 ☆☆☆와 의논하여 면접대상자 10명¹⁾을 임의로 정해 주고, 면접대상자로 정해진 10명이 서류심사 점수 합계 상위 10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실무자 ◆◆◆이 사후에 점수를 부여하여 서류전형 평정표를 만들어 주면 나중에 서명날인만 하였다.

이에 감사과정에서 위 세부 채점기준에 따라 지원자 40명에 대해서 재평가한 본 결과²⁾ [표 2]와 같이 당시 ♣♣♣, ◇◇◇, □□□ 등 3명은 재평가 시

1) 채용계획수립시 면접대상자를 채용예정인원 2명의 5배수인 “10명 내외”로 표기하였어야 하나, 단순착오로 “5명 내외”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

2) 1차 서류심사 세부 채점기준을 만들면서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성적 요소를 없앤 결과, 재평가 가능

11위, 15위, 21위로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여서는 안 될 지원자였는데도 당초 순위를 8위, 8위, 3위로 부여하여 면접대상자로 선정되었고, ○○○, ◆◆◆, ∞∞∞ 등 3명은 재평가 시 5위, 5위, 8위로 면접대상자로 선정되었어야 했는데도 당초 순위를 19위, 12위, 11위로 부여하여 면접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특히, ♣♣♣은 재평가시 11위로 면접대상자로 선정되어서는 안 되는 자였는데도 면접대상자로 선정되어 결국 2010. 2. 1.자로 부당하게 최종합격되었다.

[표2] 1차 서류심사 재평가 결과

당초 서류심사에서는 합격, 재평가시에는 탈락 (당초 순위 / 재평가 순위)	당초 서류심사에서는 탈락, 재평가시에는 합격 (당초 순위 / 재평가 순위)
♣♣♣(8 / 11) ◇◇◇(8 / 15) □□□(3 / 21)	○○○(19 / 5) ◆◆◆(12 / 5) ∞∞∞(11 / 8)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서 위 사람들은 우수한 사람을 뽑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변명하나 1차 서류심사는 채점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어야 선의의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변명은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위 사람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와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군포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 연구비 부당 편취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에서 2009. 3. 26.부터 2011. 1. 15.까지 “군포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연구책임자: ○○○, 발주처: 군포시청, 총 용역금액: 211,500천 원, 이하 “군포용역”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군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연구교수1)로 하여금 연구비 지급 등의 연구비 관리에 관한 실무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 연구과제 수행 이외의 목적에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르면 연구비 정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연구비 지급 청구서를 작성 관리기관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구수행 중 지원기관이 정한 의무사항(관련법규 및 연구비 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군포용역 연구비 정산서류인 연구비(정산금) 지급청구서·지급결의서 및 정산 세부내역에 따르면 2010. 6. 7.부터 같은 해 7. 9.까지 군포용역의 현장조

1) 비전임교원의 한 종류로서 비전임교원으로는 연구교수 이외에 명예교수, 초빙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가 있음

사(군포의 도시경관 자원조사)에 참여한 ○○○에게 6,180,913원, ♣♣♣에게 5,000,000원을 현장조사비(비목: 기술료)의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대학교에서는 위 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에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위 군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가 현장조사 기간 중인 2010년 6월 초순부터 7월 초순까지 일당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에게 3,000,000원, ♣♣♣에게 3,0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한 후 2011. 2. 25. 현장조사비 11,180,913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과 ♣♣♣의 계좌로 각각 6,180,913원, 5,000,000원씩 입금되자 현장조사 기간 중 지급된 현장조사비를 사후 정산한다는 사유로 같은 날 ○○○과 ♣♣♣로 하여금 □□□의 개인 계좌인 우리은행 계좌로 계좌 이체¹⁾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위 2명의 대학원생에게 지급되어야 할 현장조사비 11,180,913원 중 6,000,000원만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5,180,913원은 □□□가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연구목적이 아닌 개인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라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가 개인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한 군포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 연구비 5,180,910원을 환수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비

1) □□□가 ○○○과 ♣♣♣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할 때부터 3,0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현장조사 기간 중 3,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과 ♣♣♣는 √√√√에서 입금된 현장조사비 일체를 □□□에게 계좌 이체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와 체결한 비전임교원 임용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인사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학사상근일용직 채용업무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인천대학교

내 용

인천대학교에서 2007. 1. 30. ‘인천대학교 기성회회계’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교무처장 등의 부속실에서 비서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학사상근일용직”으로 채용하였다.

2006. 12. 21. 제정(시행일 2007. 7. 1.)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직”이라 한다)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학사일용직원 채용 계획(안)”(2007. 1. 15., 총무과-242)과 2007. 1. 30. 위 두 사람과 위 대학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도 특정기간 동안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근로 조건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위 사람들은 위 법률 시행과 함께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었다.

한편, 「인천대학교 학사계약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조 내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학사계약직”은 기성회 재원으로 총장이 임용하는 자로써

직원의 직종 및 정원은 총장의 요청에 따라 기성회 이사회에서 정하고, 일정 자격기준을 정하여 공고 후 채용할 수 있으며, 근무상한은 57세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2명을 채용하면서 “학사상근일용직”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
기는 하였지만 기성회회계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인건비 지급액에 있어
서도 학사계약직 다, 라급과 비슷한 수준²⁾이며, 위 2명을 채용하기 전이나 이후에
기성회회계 예산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은 학사직(공무원) 및 학사계약직 이
외에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근무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에서 그 실질은 학
사계약직과 차이가 없으므로 위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총장의 요청으로 기성회
이사회를 통해 직종 및 정원을 정하고 공고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채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대학교에서는 2007. 1. 30. 위 두 사람을 학사계약직과 그 실질이
같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도 위 규정에서 정한 공고절차 등도 없이 위 대
학교 소속 사무처장이 추천한 ☆☆☆³⁾ 및 ▶▶▶⁴⁾을 대상으로 사무처장 등 3
명⁵⁾의 면접만을 거쳐 학사상근일용직으로 채용하였다.

그 결과 ☆☆☆과 ▶▶▶은 각각 공업대학(2년제) ○○○학과와 전
문대학 학과를 졸업한 후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직장 근
무경력이 없는 등 비서 업무의 경험⁶⁾이 없었고 관련 국가기술자격도 없어 위

2) 2011년도 기준으로 ☆☆☆, ▶▶▶(총 근무경력 4년 9개월)과 학사계약직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라급 직원 ♥♥♥
(총근무 경력 3년 7개월)에게 실제 지급된 연간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각각 20,766천 원과 18,522천 원으로 ☆☆☆,
▶▶▶에게 라급 학사계약직 직원보다 더 많은 인건비가 지급되었으며, 학사계약직 다급 직원(총 14명)의 경우에
는 연간 인건비가 21,000천 원 내지 23,697천 원으로 ☆☆☆, ▶▶▶의 연간 인건비 지급액과 큰 차이가 없었음

3) 당시 인천광역시 담당관 △△△의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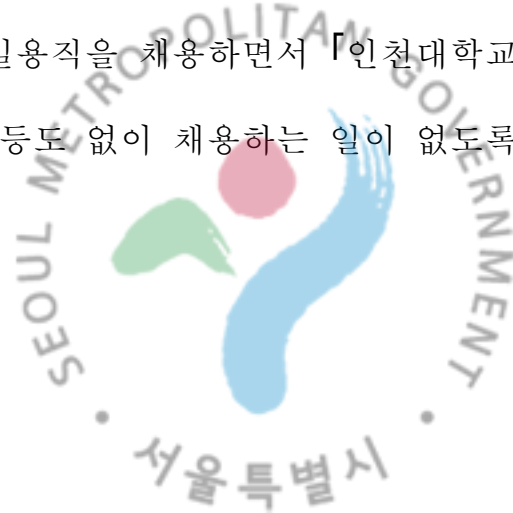
4) 인천광역시 시의원(성명 모름)으로부터 채용을 부탁받은 자

5) 나머지 2명은 과장, 과장임

6) 2011. 1. 28. 전문학사 학위취득자로서 영어회화 가능자를 학사계약직 다급의 총장실 비서로 채용하면서 인천광
역시 홈페이지 등에 채용 공고를 하였고, 입사에 지원한 6명은 비서 관련학과 졸업, 비서 자격증 소지, 비서 업

규정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학사계약직 “다”급의 채용자격기준⁷⁾에 미달하면
서도 2008. 1. 1. 학사상근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서류심사, 필기시
험, 면접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채용된 학사계약직 “다”급과 유사한 대우⁸⁾를
받으면서 2011년 11월 현재까지 근무하게 하는 등 직원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되
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대학교 총장은 앞으로 학사계약직과 그 실질이 같은 무
기계약직으로 학사상근일용직을 채용하면서 「인천대학교 학사계약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공고절차 등도 없이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
시기 바랍니다.



무 경험자인데도 서류심사 과정에서 2명은 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4명은 영어실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지원자 모두 탈락하였음

- 7) 위 규정 [별표 2]에 따르면 “다”급의 채용자격기준은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 및 전문학사학위나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총장이 “다”급에 해당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 8) 2011년도 ☆☆☆과 ▶▶▶은 ① 연봉(급여를 연봉으로 환산)이 20,796천 원으로 위 규정 [별표2]에 따른 “다”급의
연봉(최저 1,600만 원에서 최고 2,400만 원) 수준에 해당하고, ② 학사계약직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됨

감 사 원

주의요구·통보

제 목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 운용 및 서류심사 업무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인천대학교
내 용

인천대학교에서 2011학년도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을 신설하여 2011학년도에 36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하였다.

1. 지원자격 운용 부적정

위 대학교에서는 2011학년도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손·자녀¹⁾는 물론 군인·경찰공무원 등의 자녀와 백혈병·소아암 병력자 등을 사회적 배려의 대상이라는 사유로 별도의 최저학력기준 없이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 있거나 소질이 두드러지는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 군인·경찰공무원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을 운영할 때에는 다른 대학의 운영현황²⁾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

1) 자녀 및 손자·손녀

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등이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아무런 직급의 상한선도 두지 않은 채 15년 이상 재직중인 모든 직업군인 및 경찰공무원의 자녀를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지원자격에 포함하여 2011학년도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병대 소속 대령 □□□³⁾의 자녀 □□□과 ※※경찰청 소속 경감 ◎◎◎⁴⁾의 자녀 ○○○이 위 관서의 2011학년도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 되는 등 다른 대학교에서 상한선으로 두고 있는 직급보다 상위 직급의 공무원 자녀가 사회적배려대상자라는 사유로 면접전형만 거쳐 신입생으로 선발되고 있었다.

2. 서류심사 업무 부적정

위 대학교에서는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하여 2010. 6. 3. “2011학년도 신입학전형 주요계획(안)”(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의결)을 확정하여 317명으로부터 원서를 접수하였고, 같은 해 9. 17.부터 9. 30.까지 지원자격 충족 여부 심사 등의 서류전형을 거쳐 178명을 면접대상자로 선발하였으며, 같은 해 10. 23.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 36명을 선발하였다.

2)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서 실시한 2011학년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한 특별전형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대 등 10개 대학교에서는 직업군인의 경우 부사관 이하의 자녀만,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위 이하의 자녀만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그 지원자격을 일정직급이하 공무원의 자녀로 규정하여 운영하거나 환경미화원 등만을 대상에 포함

3) 전형 당시 ○○대 ○○훈련단 제**예비군관리연대에서 근무

4) 전형 당시 ○○지방경찰청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근무

“2011학년도 신입학전형 주요계획(안)”에 따르면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은 ‘직업군인,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집배원, 환경미화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응시자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학생부 성적 상위순으로 최종합격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⁵⁾하면서 ▲▲▲▲대학 ▼▼▼▼학부에 응시한 ◇◇◇의 경우 퇴직(응시일 기준 3개월 여 전 퇴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하는데도 합격처리되어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었다.

그 결과 서류전형에서 합격했어야 할 학생부 성적 5위인 ★★ ★이 ◇◇◇의 합격으로 인해 불합격 처리되었고, ◇◇◇ 대신 다른 응시자 1명(5명⁶⁾ 중 1명이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어야 하는데도 불합격 처리되었다.

조치할 사항 인천대학교 총장은

[통보] 군인·경찰 공무원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별전형 지원 자격 요건에 직급 상한선을 두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 2010. 9. 17.부터 같은 해 9. 30.까지 14일간 지원자 317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

6) 면접시험에 최종 응시한 4명과 서류전형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 ★을 포함한 5명

[주의]

- ① 앞으로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 전형 업무를 하면서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생을 합격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며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의요구·통보

제 목 재학생 성적 부여 등 학사 운영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경남도립거창대학

내 용

경남도립거창대학에서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칙」 제4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재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확인하고 평가시험을 거쳐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및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칙」 제41조, 제42조 제2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업 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 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하고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응시하여 성적을 받은 경우에도 성적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대학 ○○○○○○○○○학과와 ××××××××학과에서는 2011학년도 1학기에 [표]와 같이 ○○○○○○○○○학과 학생 ○○○의 경우 2011. 4. 19. 부터 경상남도 거제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고 있어 총 수업시간 수의 2분의 1을 결석하였는데도 위 학생이 수강 신청한 일어회화 I 등 9개 과목에 모두 학점(A학점: 7개 과목, B학점: 2개 과목)을 부여하는 등 위 2개 학과

소속 학생 4명이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였는데도 출석한 것으로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

[표] 취업하여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 현황

학생 성명	학과명	입학연도	과목명	취업일자	직장 소재지	직장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20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2011. 4.19.	경상남도 거제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		2006		2010. 7.13.	경상북도 구미시	
◇◇◇◇		2010		2011. 4.19.	경상남도 거제시	
□□□		2010		2011. 2. 1.	부산광역시 동구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은

[통보] ○○○○ 등 4명에 대하여 교과목별 수업 출석 여부를 조사하여 「경남도립거창대학 학칙」 제41조, 제42조 제2항 및 제4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부여한 성적을 취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주의] 앞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학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의요구·통보

제 목 재학생 성적 부여 등 학사 운영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경북도립대학

내 용

경북도립대학에서 「경북도립대학 학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재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확인하고 평가시험을 거쳐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및 「경북도립대학 학칙」 제42조, 제54조, 제59조 제2항 및 제69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업 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응시하여 성적을 받은 경우에도 성적을 취소하는 한편 총장이 제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대학 ●●●● ●●●계열 학과의 2011학년도 1학기 “프로젝트” 과목의 경우 [표]와 같이 수강학생 ○○○은 2009. 5. 1.부터 강원도 강릉시에 소재한 ○○종합농기계에 근무하고 있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 등 5명은 “프로젝트” 과목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¹⁾을 결석하였는데도 담당교수 ◆◆◆은 이들 모두를 하루의 결석도 없이 전체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으

1) 3학점 수업으로서 15주간의 총 수업시간은 45시간이고, ○○○ 등 5명의 학생은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인 12시간 (4일) 이상 결석

로 위 학생들에게 B학점 이상을 부여하였다.

[표] 프로젝트 과목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출석처리 및 학점 부여 현황

성명	취업일자	직장 소재지	직장명	출석처리 및 학점 부여	
				결석일수	학점
○○○	2009. 5. 1.	강원도 강릉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출석일수의 1/4 이상	A
○○○○	2011. 4.17.	경기도 안양시		"	A
▽▽▽	2006.10. 9.	서울특별시 강남구		"	B
☆☆☆	2008.11.17.	경기도 수원시		"	B
▶▶▶	2009.12. 1.	경상북도 경주시		"	A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북도립대학 총장은

[통보] 프로젝트 과목을 4분의 1 이상 결석하고도 학점을 부여받은 ○○○ 등 5명의 학생에 대하여 교과목별 수업 출석 여부를 조사하여 「경북도립대학 학칙」 제42조, 제54조, 제59조 제2항 및 제69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부여한 성적을 취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주의] 앞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학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의요구·통보

제 목 재학생 성적 부여 등 학사 관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관 계 기 관 충북도립대학

내 용

충북도립대학에서 「충북도립대학 학칙」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재학생에 대하여 출석을 확인하고 평가시험을 거쳐 성적을 부여하는 등 학사관리를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및 「충북도립대학 학칙」 제30조 및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업 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 학칙 시행세칙」 제21조와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과 담당교수는 강의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고 각 교과목의 실제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는 시험 등의 점수에 불구하고 성적을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대학에서는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여 각 교과목의 실제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는 시험 등의 점수에 불구하고 성적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대학 ◆◆◆◆과에 2011학년도 1학기에 등록한 2학년 학생 32명 중 ◆◆◆ 등 12명은 학기 초 취업 이후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 교과목 총 수업 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없는데도 위 학과에서는 이들 취업 학생에 대하여 [별표] “의료전자과 취업자의 2011학년도 1학기 성적 부여 명세”와 같이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북도립대학 총장은

[통보] ◆◆◆ 등 12명에 대하여 교과목별 수업 출석 여부를 조사하여 「충북도립대학 학칙」 제36조 및 「충북도립대학 학칙 시행세칙」 제25조, 제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부여한 성적을 취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주의] 앞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학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과 취업자의 2011학년도 1학기 성적 부여 명세

일련 번호	성명	취업일	직장명 (소재지)	교과목	교과목 평균학점
1	○○○	2010. 12. 1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2.65
2	○○○	2010. 01. 20.			2.65
3	○○○	2011. 04. 11.			2.64
4	○○○	2011. 01. 18.			2.73
5	○○○	2011. 04. 01.			2.73
6	○○○	2011. 05. 01.			3.15
7	○○○	2011. 02. 23			2.78
8	○○○	2011. 05. 12.			3.23
9	○○○	2011. 05. 12.			3.33
10	○○○	2011. 04. 05.			2.85
11	○○○	2011. 04. 25.			3.13
12	○○○	2011. 04. 25.			3.13

자료: 감사대상기관 감사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청양군 본청

내 용

청양군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청양대학 재학생 중에 성적우수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한 뒤, 졸업 후 위 관서 지방공무원 9급으로 임용하고 있다.

2009년 9월 수립된 “2009년도 청양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관련 방침결정”(군수 ○○○ 결재)에 따르면 ‘학과별 성적 최우수자를 선발하되, 과도한 인원의 특별임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직렬의 학과를 대상으로 행정, 전산, 환경 등 9급 3명을 청양대학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방침에 따라 같은 해 10. 19. 행정9급, 전산9급, 환경9급 1명씩 3명을 청양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로 선발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9년 12월 “2009년도 청양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추가 선발 관련 방침결정”(2009년 12월)을 수립한 뒤, 또다시 2010. 1. 4. 충남도립청양대학 컴퓨터정보과 학생 를 전산9급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추가 선발하였다.¹⁾

이에 감사원에서 이번 감사기간 중에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추가 선발하게 된 사유를 확인해 본 결과,²⁾ 2009년 10월경(날짜 모름) ◇◇◇의 어머니가 군수실에서 전임군수 ○○○에게 ‘아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주겠다’며 아들 ◇◇◇를 장학생으로 선발해 줄 것을 부탁하자, 전임군수는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말한 뒤 같은 해 12월 중순경(날짜 모름) 당시 ◇◇◇과장 ◇◇◇에게 전산9급 1명을 추가로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추가 선발은 문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도 장학생 추가 선발을 추진하라고 재차 지시하여 결국 ◇◇◇는 2010. 1. 4.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조치할 사항 청양군수는 앞으로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청양군에서 매 학년(1~2학년) 1학기분 등록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청양군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됨

2) ◇◇◇ 학생의 부모 및 당시 청양군 ◇◇◇과장 ◇◇◇의 진술에 근거하여 작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하동군 본청

내 용

하동군에서 2009. 8. 17.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선발계획”(이하 “당초 공고문”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경남도립남해대학 조선토목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같은 해 10. 16. ■■■■■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자격,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등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당초 공고문에 따르면 자격요건은 ‘2009. 1. 1. 이전부터 응시일까지 하동군 관내에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경남도립남해대학 조선토목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되어 있었으며, 선발인원의 2배수인 2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9. 8. 27. 임용권자인 군수의 방침과는 다르게 자격요건에 하동군 관내 고등학교 출신자를 추가하고, 2배수가 아닌 3배수를 선발

하는 것으로 공고 내용을 변경하여 위 관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와 같이 당초 공고문대로 하면 성적에 따른 서류전형 결과 3위 또는 4위¹⁾로 2배수 내에 포함될 수 없었던 **♣♣♣**가 서류전형을 통과하여 면접전형을 거쳐 2009. 10. 16.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었고, 2009년 2학기에 3,0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뒤 2010. 2. 9. 위 관서의 지방시설서기보로 특별임용 되었다.

[표] 서류전형 결과

성명	성적 순위 ¹⁾	서류전형 응시 여부	서류전형 결과	관내 고등학교 출신 여부	서류전형 합격 또는 불합격 사유
◆◆◆	1위	○	불합격	×	하동군 관내가 아닌 고등학교 출신으로 서류전형 불합격
○○○	2위	×	-	×	하동군 관내가 아닌 고등학교 출신으로 전형에 미응시
♣♣♣	3위	○	합격	○	서류전형 결과 1위로 합격
♣♣♣	4위	"	합격	○	서류전형 결과 2위로 합격
◇◇◇	5위	×	-	×	하동군 관내가 아닌 고등학교 출신으로 전형에 미응시
□□□	6위	○	불합격	○	직전 학기 성적 85점 미만으로 자격요건 미충족
○○○	7위	○	불합격	○	직전 학기 성적 85점 미만으로 자격요건 미충족
◆◆◆	8위	○	불합격	○	직전 학기 성적 85점 미만으로 자격요건 미충족
♡♡♡	9위	×	-	×	하동군 관내가 아닌 고등학교 출신으로 전형에 미응시
☆☆☆	10위	×	-	○	직전 학기 성적 85점 미만으로 자격요건 미충족
※※※	11위	×	-	○	직전 학기 성적 85점 미만으로 자격요건 미충족

주: 직전학기 성적을 포함한 3학기(1학년 1학기·2학기 및 2학년 2학기) 성적 평균 점수의 순위로서 3학기 성적 평균 점수의 상위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 ① 앞으로 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장학생 선발 업무를 하면서 임용권자의 결재 이후 공고문이 변경되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업무

1) 당초 공고문대로 공고를 하였을 경우 ○○○이 응시하지 않았다면 3위이고 응시하였다면 4위

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e-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입찰자격 부당 제한 및 원고료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립대학
내 용

강원도립대학 ●●●●단에서 ●●●●시스템(대표 ○○○, 강원도 동해시)과 ‘전공자격증 e-러닝 콘텐츠 개발용역(금액: 52,200,000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교육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과 □□□ 등 37명에게 e-러닝 콘텐츠 개발¹⁾ 원고료를 지급하였다.

1. 입찰자격 부당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제한 입찰을 할 경우에는 용역 등의 수행실적 등을 중복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단에서는 2009. 10. 29. ‘전공자격증 e-러닝 콘텐츠 개발 용역’을 공고하면서 대학 등에 납품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한다는 사유로 ‘강원도 내 지역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업체’로 지역제한을 하고서도 ‘최근 2년 이내 관공서에 공무원 및 자격증 관련 콘텐츠 개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자격을 추가로 제한하였다.

1) 전공자격증 취득을 위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 및 풀이 등을 동영상 형태로 개발

더욱이 위 ㉔㉔㉔㉔단에서는 지역제한 외에 실적 요건을 정하면서도 관공서 납품실적과 공무원 및 자격증 관련 콘텐츠 개발이라는 특정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였다.

그 결과 위 개발용역을 공고하기 전인 2009. 6. 17. 위 ㉔㉔㉔㉔단에서 발주한 ‘기술직공무원 시험과정 콘텐츠 개발용역’²⁾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㉔㉔㉔㉔㉔시스템³⁾만 입찰자격을 충족하게 되어 같은 해 11. 12. 위 업체와 수의계약⁴⁾을 체결하였다.

그 후에도 위 ㉔㉔㉔㉔단에서는 이와 같이 ㉔㉔㉔㉔㉔시스템만 입찰자격을 충족하도록 입찰자격을 제한하여 총 4차례에 걸쳐 계 121,084,000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위 업체와 체결하였다.

2. 원고료 지급 부적정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자체운영규정」 6. 사업비 집행 불가 사항에 따르면 시중 판매교재로 활용이 가능한 교재의 개발, 기존 연구결과를 대부분 인용하여 집필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연구비(교재개발비) 등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기사 등 각종 자격시험 등의 기출문제와 풀이는 시중에 많은 교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시험관리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고, 시험 종료 후 응시자가 직접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

2) 기술직공무원 시험과정 콘텐츠 개발용역 공고 당시에는 지역제한만 하고 실적제한은 하지 않았음

3) 위 업체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업체로서 이 건 계약발주 당시 위 ㉔㉔㉔㉔단에서 발주한 기술직공무원 시험과정 콘텐츠 개발용역이 유일한 실적이었음

4) 위 업체의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2009. 11. 4. 재공고하였으나 이 또한 위 업체 단독응찰로 유찰

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출문제를 선정하고 이를 풀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단에서는 2010. 1. 25. 식품산업기사 자격시험 기출문제를 선정하여 이를 풀이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작성·제출한 △△△△△△△△과 부교수 □□□에게 300만 원(장당 10,000원 × 300장)을 지급하는 등 [별표] “e-러닝 콘텐츠 개발 원고료 지급 현황”과 같이 2009년부터 2011년 10월 현재까지 △△△△△△△△과 부교수 ☆☆☆ 등 37명에게 1인당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씩 계 1억 6,200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원도립대학 총장은

- ① 앞으로 특정업체에서 유리하도록 입찰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계약 및 연구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e-러닝 콘텐츠 개발 원고료 지급 현황

(금액단위: 천 원)

연번	연도	학과	성명	교 재 명	금액	교재내용 및 범위
1	200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	식품화학	3,000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영양화학
2			○○○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6,000	식품파 전염병, 식품위생관련 법규
3			○○○	식품가공학	3,000	식품공학기초, 식품가공기법
4			○○○	어류양식	3,000	어류양식에 관한 이론과 지식
5			○○○	무척추동물양식	3,000	무척추동물에 대한 이론과 지식
6			○○○	수산생물	3,000	수산생물에 관한 이론과 지식
7			○○○	해조류양식	3,000	해조류양식에 관한 이론과 지식
8			○○○	수질관리 및 양식생물질병	3,000	수질 및 어류질병에 관한 이론과 지식
9			○○○	지적측량, 응용측량	6,000	기초측량, 세부측량, 면적측정
10			○○○	지적학, 지적관계법규, 토지정보체계론	9,000	지적제도의 발달, 지적관계법규, 토지정보체계일반
11			○○○	응용역학	3,000	응용역학에 관한 이론과 지식
12			○○○	수리학 및 수문학, 상하수도공학	6,000	수리학, 수문학, 상하수도공학의 이론과 지식
13			○○○	토질역학, 측량학	6,000	토질역학, 측량학의 기초이론
14			○○○	디지털전자회로, 무선통신기기, 무선설비기준	7,500	전원회로, 무선통신방식, 무선설비조건
15			○○○	무선설비기준, 전자계산기일반	4,500	무선설비조건, 전자계산기구조
16			○○○	안테나공학	3,000	전자파이론, 안테나의 종류 및 특성
17			○○○	3급 항해사(해사영어)	3,000	항해영어기초, 표준해사통신용어
18			○○○	3급 항해사(항해)	3,000	항로표지, 항해계획
19			○○○	3급 기관사(기관3)	3,000	전기전자
20			○○○	3급 기관사(기관1)	6,000	내연기관
21	2010	○○○	기계요소 및 공작법, 일반기계공학	6,000	기계요소, 기계공작법	
22		○○○	자동차공학, 자동차정비	6,000	기계재료 역학과 유체기계	
23		○○○	자동차검사	3,000	엔진, 새시구조, 전기	
24		○○○	시스템분석 및 설계, 데이터베이스	6,000	프로세스와 프로그램 설계, 데이터베이스 모델과 언어	
25		○○○	운영체제, 정보통신	6,000	기억장치, 정보분산 운영체제, 정보통신분야의 전반적인 기술	
26		○○○	전자계산기구조	3,000	논리회로, 프러세서 및 명령실행과 제어방식	
27		○○○	소방학개론, 소방법규	6,000	연소, 화재, 소화, 위험물 소방기본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연번	연도	학과	성명	교 재 명	금액	교재내용 및 범위
28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	소방유체역학 및 약제화학,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6,000	유체의 기본성질, 약제화학 소방시설의 종류, 소화설비
29			○○○	주류학개론, 주창관리개론	6,000	주류분야의 다양한 관련 지식 습득, 주창의 개요, 주창운영관리
30			○○○	고객서비스영어, TOEIC RC	6,000	고객서비스영어, TOEIC RC
31			○○○	3급 기관사(기관2)	3,000	기계공작법, 설계제도
32			○○○	3급 항해사(어선전문)	3,000	수산관련법, 수산실무
33			○○○	3급 항해사(운용)	3,000	선박의 구조 및 설비, 승무원 관리 및 훈련
34			○○○	외연·추진·연료·윤활	3,000	외연기관, 추진공학, 연료 및 윤활공학
35			○○○	3급 항해사(법규)	3,000	선박안전법, 해난심판법, 해상교통안전법
36			201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	색채학, 인쇄 및 사진기법
37	○○○	시각디자인론, 시각디자인실무			3,000	디자인 요소와 원리, 디자인 관리 시각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특성
계			○○○		162,0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교수 승진심사 시 연구실적 중복 사용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관 계 기 관 충남도립청양대학

내 용

충남도립청양대학에서 소속 교수의 연구실적이 일정 기준¹⁾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승진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 있다.

「청양대학교원 인사관리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승진임용은 현직급 임용기간 내 연구실적물 200%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구실적물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연구결과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인용표시하거나 출처 등을 밝히지 않고 임용 당시 인정받은 연구실적을 전 부분에 걸쳐 인용한다거나 이를 승진심사 시에 실적으로 제출하여 인정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대학 소속 ⊗⊗⊗⊗ 과 조교수 □□□의 경우 전임강사로 임용 (2008. 3. 21.자)될 당시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은 저서 ‘기초 전기전자회로 실험’(예스벨출판사, 2008년 1월)을 인용표시하거나 출처 등을 밝히지 않고 [별표] “2010.

1) 현 직급 임용기간 내 연구실적물 200% 이상

4. 1.자 승진심사 시 연구실적 중복 사용 부분”과 같이 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연구실적인 ‘산업전자실무를 위한 전기회로 실험’(청양대학 주문식 교육사업 개발 교재, 2008년 12월)을 조교수로 승진심사(2010. 4. 1.자) 시 3인 공저의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여 점수를 50% 인정받았다.

조치할 사항 충남도립청양대학 총장은

- ① 앞으로 교수 승진심사 시 임용 시 인정받은 연구실적 등을 중복으로 제출하여 인정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승진심사 시 연구실적 중복 사용 현황

연번	성명 (승진일)	직급	기초 전기전자 회로 실험 (신규채용시 제출 저서, '08. 1., 단독저서)	산업전자실무를 위한 전기회로 실험 (※※도립◇◇대학주문식사업단, '08.12., 3인 공저)	일치정도
1	○○○ ('10. 4. 1.)	전임강사→ 조교수	p.11~12 (2. 전기부품 기호)	p.36~38 (3. 전기부품 기호)	인용표시 없이 전면 동일
2			p.12~35 (3. 저항 판독법)	p.39~58 (4. 저항 판독법)	"
3			p.37~50 (4. 콘덴서와 인덕터 판독법)	p.60~71 (5. 콘덴서와 인덕터 판독법)	"
4			p.51~55 (5. 멀티미터와 전원공급장치 사용법)	p.73~76 (6. 멀티미터와 전원공급장치 사용법)	"
5			p.61~67 (6. 분압기와 분류기)	p.77~82 (7. 분압기와 분류기)	"
6			p.69~73 (7. Kirchhoff's Current Law)	p.69~73 (8. Kirchhoff's Current Law)	"
7			p.75~80 (8. Kirchhoff's Voltage Law)	p.75~80 (9. Kirchhoff's Voltage Law)	"
8			p.81~91 (9. Thevenin & Norton 정리)	p.81~91 (10. Thevenin & Norton 정리)	"
9			p.93~101 (10. 중첩의 정리와 가역정리)	p.93~101 (11. 중첩의 정리와 가역정리)	"
10			p.103~114 (11. Op-Amp의 동작원리)	p.103~114 (12. Op-Amp의 동작원리)	"
11			p.116~127 (12. Op-Amp 증폭 실험)	p.116~127 (13. Op-Amp 증폭 실험)	"
12			p.129~134 (13. 직류에서 최대 전력 전달)	p.129~134 (14. 직류에서 최대 전력 전달)	"
13			p.137~140 (14. Digital Multimeter 사용법)	p.137~140 (27. Digital Multimeter 사용법)	"
14			p.141~152 (15. DC Power Supply 사용법)	p.141~152 (28. DC Power Supply 사용법)	"
15			p.153~157 (16. Analog Lab Trainer 사용법)	p.153~157 (29. Analog Lab Trainer 사용법)	"
16			p.158~163 (17. Bread Board 사용법)	p.158~163 (31. Bread Board 사용법)	"
17			p.164 (18. 저항의 색깔 및 저항 소자의 표준)	p.164 (32. 저항의 색깔 및 저항 소자의 표준)	"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의요구·통보

제 목 교수 승진심사 시 연구실적 중복 사용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에서 2008학년도 상반기부터 2011학년도 하반기까지 4년 동안 교수 74명을 신규채용하였고, 2010학년도 상반기부터 2011학년도 하반기까지 2년 동안 총 74명의 교수를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규임용규정」 제14조 제2항 및 제4항, 별지서식 제6호 일반분야 연구실적심사평가표(A)¹⁾에 따라 ① 3년 이내 발표한 실적, ② 게재 예정실적, ③ 3년 경과 5년 이내 발표한 실적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임용은 조교수의 경우 4년의 임용기간이 지난 후 임용기간 동안의 연구실적 360점,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승진은 승진소요연수 4년이 지난 후 임용기간 동안의 연구실적 480점을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업적평가결과는 교원의 인사관리 및 연구보조비 지급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시립

1) 연구실적(65점)은 ① 3년 이내 발표한 실적, ② 게재예정실적, ③ 3년 경과 5년 이내 발표한 실적으로 구성

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를 자신의 연구성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교수 신규임용 시에는 늦어도 임용일 이전에 게재될 게재예정연구물에 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거나 임용 이후 승진 및 업적평가 시에는 신규채용 시 인정받은 게재예정연구물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연구실적 제한규정을 두어야 동일한 연구물이 임용 및 승진 등에서 연구실적으로 중복 인정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¹⁾

또한 교수 신규채용 당시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은 박사학위 논문 등을 재임 기간 동안 그대로 재인용한 연구실적을 승진심사 시에 연구실적으로 중복 인정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게재예정연구물 중복 사용 부적정

2008학년도 상반기부터 2011학년도 하반기까지 신규채용된 총 74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당시 인정된 게재예정연구물이 임용 이후에 게재(발표)되어 연구업적 및 승진 시에 중복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확인해 본 결과 2008. 9. 1. 임용 당시 실적으로 인정받은 학과 의 연구실적물의 경우 임용 이후인 2009년 4월에 게재되는 등 [별표 1] “교수 임용 이후 게재(발표)된 게재예정실적을 채용 시 연구실적으로 인정한 현황”과 같이 총 5명의 교수가 임용 이

1) 참고로 “서울대학교 ○○○○대학 2011학년도 제1차 교수채용 공고”에 따르면 게재예정실적에 대해서 출판예정일이 명기되어야 하고, 교수 임용 추천 전(2011년 6월)까지는 반드시 출판되어야 하며, 게재된 연구실적물은 응모 시 제출한 연구실적물과 반드시 동일한 경우(추가, 삭제, 수정 불인정)에만 인정하도록 명확하게 제한을 두고 있고, “충남대학교 □□학부 2012학년도 1학기 교수채용 공고”에 따르면 모든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게재일, 발표일 또는 등록일 등은 최근 3년 이내의 것이어야만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후에 게재된 연구실적을 신규임용 시에 미리 인정받았다.

또한 위 [별표 2]의 경우 신규임용 당시 인정받은 게재예정연구물을 2009년도 연구업적으로 중복 제출하여 연구업적 평가등급을 “나2”로 받아 연구보조비 436천 원을 더 많이 지급받는 등 [별표 2] “연구실적 중복 인정으로 연구업적을 부당 평가한 현황”과 같이 위 5명의 교수가 임용 당시 인정받은 실적을 중복 인정받아 연구업적 평가등급을 높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연구보조비도 1,134천 원을 더 많이 지급받았다.

특히 2009. 3. 1.자 [별표 2]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별표 2]은 임용 당시 인정받은 게재예정연구물이 임용 이후인 2009년 5월 게재된 뒤, 2011. 3. 1.자 승진 임용시 이를 다시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여 승진 시 필요한 연구실적 점수 240점 중 170점(총 275점의 연구실적물 제출)을 인정받아 승진임용되는 등 위 5명의 교수 중 [별표 3] “승진 시 게재예정실적을 중복 인정한 현황”과 같이 3명이 승진 소요연수 임용기간 동안 연구한 업적과 무관하게 채용 당시 인정받은 게재예정 연구물을 승진 시 중복 제출하여 승진점수로 인정받았다.

나. 학위논문 중복 사용 부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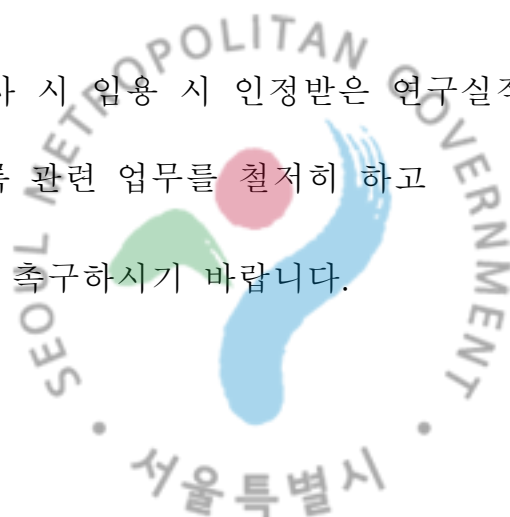
2006. 8. 1.자 [별표 4] 학부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별표 4]는 임용 당시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여 인정받은 박사학위 논문을 대부분에 걸쳐 그대로 인용한 것을 4년 후인 2010. 9. 1.자 승진심사 시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여 100점의 연구실적 점수를 인정받아 부교수로 승진하는 등 [별표 4] “승진 시 학위논문 중복 인정 현황”과 같이 [별표 4] 등 2명이 교수 임용 시 인정받은 박사학위 논문 연구실적을 학술지에 재인용한 것을 승진심사 시에 또다시 연구실적으로 점수를 인정받았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통보] 교수 신규채용 시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재예정연구물을 늦어도 임용 이전에 게재되는 것에 한해 인정하거나 임용 시 인정받은 게재예정연구물을 승진 및 업적평가 시에는 연구실적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는 등 게재예정연구물 중복 사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의]

- ① 앞으로 교수 승진심사 시 임용 시 인정받은 연구실적 등을 중복으로 제출하여 인정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교수 임용 이후 게재(발표)된 게재예정실적을 채용 시 연구실적으로 인정한 현황

(단위: 점)

연번	채용 연월	소속	성명 (직명)	채용시 게재예정.실적			각 심사위원 점수						
				실적명	게재연월	게재지	A	B	C	D	E	F	평균
1	'08.8.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 (□□□)		'09.4.	Computational Statistics & Data Analysis	15	15	15	15	15	15	15
2	'09.3.1.		○○○ (□□□)		'09.5.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8.4	8.4	7.6	6.72	8.4	8.4	7.9
3	'09.3.1.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09.3.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ing	3	3	3	3	3	3	3
4	'09.9.1.		○○○ (□□□)		'10.8.	Empirical Economics	10	9	6	7	5	6	7.17
5	'10.4.1.		○○○ (□□□)		'10.6.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10	15	15	15	15		14.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2]

연구실적 중복 인정으로 연구업적을 부당 평가한 현황

(단위: 점, 천 원)

학과	성명	연구실적물 (계재일)	연구영역 점수			환산점수 (교육연구봉사)		평가등급		연구보조비 지급액		
			평가 점수 (a)	포함 (b)	제외 (c)= a-b	포함	제외	포함	제외	포함	제외	부당 지급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340	415.52	75.52	85.32	75.32	나2	다2	2,181	1,745	436
	○○○		170	348.35	178.35	84.78	79.28	나2	다1	2,181	1,963	218
	○○○		62.5	729.25	666.75	94.17	88.17	가2	나1	2,399	2,290	109
	○○○		175	322.5	147.5	86	80	나1	나2	2,600	2,476	123
	○○○		125	385	260	90	84	가2	나2	2,724	2,476	248
	합계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3]

승진 시 게재예정실적을 중복 인정한 현황

(단위: 점)

소속	성명	임용일 (임용직급)	승진일 (임용직급)	채용 시 게재예정실적 및 박사학위 논문			승진시 논문 실적			
				실적명	게재예정일 (학위 취득일)	증빙 제출 여부	실적명	점수 (승진시 필요점수)		
○○ 학부	○○○	'09.09.01. (조교수)	'11.09.01. (부교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06.06.)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25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	0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125		
				7.17점						
계								375 (240)		
○○ ○○ 과	○○○	'09.03.01. (조교수)	'11.03.01. (부교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00.02.)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170		
※ 승진 탈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	0 (이메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55		
				7.99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50
계								275 (240)		
○○ 학과	○○○	'08.08.01. (조교수)	11.03.01. (부교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02.12.)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17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	X (자료 없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51.4		
				15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6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14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100		
계								521.4 (310)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별표 4]

승진 시 학위논문 중복 인정 현황

(단위: 점)

소속	성명	임용일 (임용직급)	승진일 (임용직급)	임용 시 게재예정실적 및 박사학위 논문			승진 시 논문 실적	
				실적명	게재 예정일 (학위 취득일)	증빙 제출여부	실적명	점수 (승진 필요 점수)
○○ ○○ 학과	○○○	'06.08.01. (조교수)	'10.09.01. (부교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05.01.)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212.5
※ 승진 탈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10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100
계								412.5 (300)
○○ 학부	○○○	'06.08.01. (조교수)	'10.09.01. (부교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06.02.)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10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7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10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8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50
계								405 (3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연구년교수가 연구비를 받고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년교수는 연구년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규정」 별표 제2호에 규정된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연구결과논문을 게재한 후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대학교 □□학부 교수 ◇◇◇는 2006. 8. 15.부터 다음 해 8. 14.까지 연구년교수로 선정되어 2011년 11월 현재까지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등 [별표]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 미제출 현황”과 같이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년 동안 총 8명의 교수가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 ① 앞으로 연구년교수가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 미제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원연도	소속	직급	성명	연구년 기간	연장신청 (기재예정명세서 제출여부)	연구결과물 제출여부
1	200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부교수	○○○	2006.08.15. ~ 2007.08.14.	×	미제출
2	2007		교수	○○○	2007.12.22. ~ 2008.12.21.		
3	2008		교수	○○○	2008.03.01. ~ 2009.02.28.		
4	2009		교수	○○○	2009.03.01. ~ 2010.02.28.		
5			교수	○○○	2009.03.01. ~ 2010.02.28.		
6			교수	○○○	2009.09.01. ~ 2010.02.28.		
7			교수	○○○	2009.09.01. ~ 2010.08.31.		
8	2010		교수	○○○	2010.03.01. ~ 2010.08.31.		
합계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교수 특별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에서 2011학년도 상반기 □□학부 ◇◇◇◇분야 교수 1명을 특별채용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규임용규정」 제3조 제5호에 따르면 특별채용대상자의 지원자격은 제출서류 조건으로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연구실적 200%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위논문으로 제출서류의 요건을 충족하고자 할 때에는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경우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2011년 상반기 신규교수 특별초빙 계획”(교무과-14317, 2010. 11. 16., 총장 방침 제966호)에 따르면 2010. 11. 17. 까지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실적물, 학력 및 성적증명서 등 심사서류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대학교의 특별채용대상자는 반드시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발표한 연구실적이 2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1학년도 상반기 □□학부 ◇◇◇◇분야 교수 특별채용대상자였던 ○○○의 경우 2010. 11. 17. 접수일 현재 공식적인 박사학위가 없어, 박사학위논문(연구실적 200% 인정)을 제외할 경우 연구실적이 200%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

인데도¹⁾ ‘12월에 공식적인 학위취득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채용을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2011년 상반기 □□학부 신규교수 특별채용 방침서 제출”(◇◇대학-3087, 2010. 10. 29.) 및 「2011년 상반기 신규교수 특별초빙 계획」(교무과-14317, 2010. 11. 16., 총장방침 제966호)을 수립한 뒤 다음 해 3. 1.자로 □□학부 ◇◇◇◇ 분야 교수로 특별채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앞으로 연구실적이 부족하여 채용자격이 안되는 자를 교수로 특별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교수채용 관련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 2010. 12. 16.자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교수 신규채용 연구실적 심사기준 운용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에서 2008년도 1학기부터 2011년도 2학기까지 4년 동안 74명을 교수로 신규채용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규임용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수 채용 관련 일반분야의 연구실적심사는 전공심사 대상자의 연구실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배점은 70점이고, 심사기준은 해당 학부·과별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대학교에서는 교수를 신규채용하면서 사전에 해당 학부·과별로 합리적인 연구실적 심사기준을 만들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동안 2008년도 1학기부터 2011년도 2학기까지 4년 동안 신규채용된 교수 74명, 해당 학부·과 63개²⁾에 대하여 학부·과별 교수채용 연구실적 심사기준 운영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2008. 3. 1.자 ○○학과 ○○○분야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해당 학과에서 세부 심사기준도 없이 연구실적을 심사하는 등 [별표] “교수채용 시 학부·과별 연구실적 세부 심사기준 미비 현황”과

2) 학기별 학부·과 중복 포함

같이 50개 학부·과에서 교수 58명(전체인원의 78.4%)을 연구실적 심사기준 없이
심사하여 채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앞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규임용
규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수 신규채용 시 학부·과별로 사전에 연구
실적 세부 심사기준을 만들어 연구실적 심사를 하도록 하는 등 학부·과별 연구
실적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교수채용 시 학부·과별 연구실적 세부 심사기준 미비 현황

연번	채용학기	학부(과)	채용분야	채용자 성명	심사기준 유무	공채/특채
1	2008년 2학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행정학(재무행정 우대)	○○○	×	공채
			행정학(조직론 우대)	○○○	×	공채
2			지역연구(러시아 및 남북한)	○○○	×	공채
3			응용미시경제학	○○○	×	공채
4			화학공학	○○○	×	공채
5			통계학	○○○	×	공채
6			질적방법, 문화	○○○	×	공채
7			건물시스템	○○○	×	공채
8			도시설계 및 도시계획	○○○	×	공채
9	멀티미디어인터랙션디자인		○○○	×	공채	
10	2008년 2학기		통계학	○○○	×	공채
11			건축설계	○○○	×	공채
12			중국응용언어학	○○○	×	공채
13			세포생물학	○○○	×	공채
14			조형	○○○	×	공채
15			세법	○○○	×	공채
16	2009년 1학기		컴퓨터그래픽스 또는 유비쿼터스시스템	○○○	×	공채
17			영어통사론	○○○	×	공채
18			중국근현대문학	○○○	×	공채
19			환경화학	○○○	×	공채
20			도시계획	○○○	×	공채
21			공간정보획득 및 처리	○○○	×	공채
22			조세정책	○○○	×	공채
23			세무회계	○○○	×	공채
24			기초법	○○○	×	공채
25	2009년 2학기		정책학	○○○	×	공채
26			정책학	○○○	×	공채
27			계량경제학 또는 거시경제학	○○○	×	공채
28			고속회로설계	○○○	×	공채
29			국어음운론	○○○	×	공채
30			통계학	○○○	×	공채
31	2010년 1학기		건축설계 및 이론	○○○	×	공채
32		조경시공, 구조 및 상세설계	○○○	×	공채	
		컴퓨터구조	○○○	×	공채	
		환경수리	○○○	×	공채	

연번	채용학기	학부(과)	채용분야	채용자 성명	심사기준 유무	공채/특채
33			장 및 입자이론	○○○	×	특채
			입자/핵물리실험	◇◇◇◇◇	×	특채
34			조세법	○○○	×	공채
35	2010년 2학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행정학 또는 정책학	○○○	×	공채
36			전자회로	○○○	×	공채
37			중국현대문화	○○○	×	공채
38			해석학 또는 응용수학	○○○	×	공채
39			도시설계	○○○	×	공채
40			세무회계	○○○	×	공채
41			행정법	○○○	×	공채
			형사법	○○○	×	특채
			형사법	○○○	×	특채
			민법	○○○	×	공채
	조세법	○○○	×	공채		
42	2011년 1학기		남북한 및 미국정치외교	○○○	×	공채
43			재정학	○○○	×	공채
44			신소재화학(화학야금, 유기소재)	○○○	×	공채
45			현대영미철학	○○○	×	특채
46			도시계획	○○○	×	공채
47			조세법	○○○	×	공채
48			상법	○○○	×	특채
49	2011년 2학기		도시계획	○○○	×	공채
50			조세법	○○○	×	공채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교수 국외여행 복무관리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서울시립대학교 교원국외여행지침」에 따라 소속 교수의 공무 및 공무 외 국외여행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위 지침에 따르면 공무 및 공무외 국외여행 시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여행 일수 등에 따라 총장 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대학 소속 교수 379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1년 10월 현재 까지 국외여행 시 승인 미이행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과 부교수 □□□의 경우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총장 또는 교무처장의 승인 없이 2011. 9. 7.(수)부터 같은 달 19.까지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등 [별표] “국외여행 시 승인 미이행 현황”과 같이 총 5명의 교수가 학기 중 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총장 또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¹⁾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① 앞으로 소속 교수들이 총장 또는 교무처장의 승인 없이 공무 및 공무 외 국

1) 위 5명 중 ◇◇◇◇대학원 교수 ◆◆◆은 법철학 과목 3시간에 대한 보강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교수 4명은 보강수업을 실시하였거나 중간고사기간 등을 사유로 보강수업이 필요없었다고 주장

외여행을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국외여행 승인 미이행 현황

연번	성명	소속	직급	출국일자 (요일)	입국일자 (요일)	개설교과목 (강의인정시수)	수업 요일
1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교수	2010. 9. 16. (목)	2010. 9. 21. (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수, 목, 금
2	□□□		부교수	2011. 9. 7. (수)	2011. 9. 19. (월)		화, 수, 목, 금
3	※※※		부교수	2010. 10. 17. (일)	2010. 10. 25. (월)		화, 수, 목
4	♣♣♣		교수	2010. 3. 25. (목)	2010. 3. 27. (토)		월, 화, 수, 금
5	◆◆◆		조교수	2010. 4. 2. (금)	2010. 4. 14. (수)		월, 목
		2011. 6. 1. (수)		2011. 6. 13. (월)	화, 목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교수 특별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규임용규정」 제22조에 따라 교수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교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¹⁾

따라서 교수 특별채용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도 전공분야와 관련이 없는 위원이나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위 대학교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규임용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교수 특별채용 심사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특별채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 2. 1.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3의 규정을 신설하여 교수 특별채용심사위원회는 해당 대학 소속 교원인 위원과 외부인사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교수 특별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용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교무처장) 및 부위원장(당해 학부·과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해 학부·과의 교원 중에서 당해 교수회의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였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 2학기 □□학부에서 ◆◆◆◆분야 교수를 특별채용하면서 전공분야와 관련이 없는 교무처장 ○○○(공학 전공)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심사하는 등 [별표] “교수 특별채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09년도 2학기부터 2011년도 1학기까지 2년 동안 총 8명의 교수를 특별채용하면서 위원을 전공분야와 무관한 자로 위촉하고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기초 및 전공심사를 실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앞으로 교수 특별채용위원회 심사위원 위촉 시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신규임용규정」 제22조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교수 특별채용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 현황

연번	연도 학기	모집분야 (학부과)	임용자 (세부전공)	임용자 성명	내부심사위원		외부심사위원
					전공분야	성 명	
1	09. 2.	□□학부		○○○	공학	○○○	없음
					경영	○○○	
					경영	○○○	
					경제	○○○	
					경영	○○○	
2	10. 1.	□□학부		△△ △△	공학	○○○	없음
					경영	○○○	
					경영	○○○	
					경영	○○○	
					경영	○○○	
3	10. 2.	□□학부		○○○	공학	○○○	없음
					산업공학	○○○	
					경영	○○○	
					산업공학	○○○	
					경영	○○○	
4	10. 2.	◆◆◆◆대학원		○○○	공학	○○○	없음
					법학	○○○	
					교육학(검시출신)	○○○	
					법학	○○○	
					법학	○○○	
5	10. 2.	◆◆◆◆대학원		○○○	공학	○○○	없음
					법학	○○○	
					문학	○○○	
					법학	○○○	
					법학	○○○	
6	11. 1.	⊗⊗과		○○○	공학	○○○	없음
					문학철학	○○○	
					철학	○○○	
					철학	○○○	
					철학	○○○	
7	11. 1.	□□학부		○○○	공학	○○○	없음
					산업공학	○○○	
					경영	○○○	
					경영	○○○	
					심리학	△△ △△	
8	11. 1.	◆◆◆◆대학원		○○○	공학	○○○	없음
					법학	○○○	
					상사학	○○○	
					법학	○○○	
					법학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청소년수련원 건립·운영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²⁾(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개교 9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연수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2007. 9. 5. 강원도 춘천시 소재 임야(○○○ 외 5필지(448,366㎡), 이하 “부지”라 한다)를 17억여 원에 매입하여 청소년수련원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

「재단법인 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정관」 제5조에는 기금목적사업의 수혜자를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교직원 및 동문으로 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에 따르면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등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재단이 불특정 청소년(9~24세)의 수련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2) 위 재단은 1997. 6. 23. 설립되어 2006~2008년 사이에 서울특별시 금고로 지정된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서울시립대학교에 출연하기로 한 100억 원을 출연받는 등 사실상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으로서, 재단 이사회 운영 및 기금관리업무를 총장, 교수 및 대학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음

청소년수련원을 건립·운영하는 것은 위 재단 설립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수련원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인허가 절차나 진입로 개설 가능 여부 및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또는 추정요건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위 부지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여서 대학연수원 건립이 불가능하자 정관상의 목적사업 변경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임시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여 5년간 운영하면 대학연수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잘못 검토하고는 2007. 8. 16.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9. 5. 부지를 매입한 후 수련원 건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에 따르면 보전산지나 농림지역내에서는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5년이 경과하더라도 청소년수련시설을 대학연수원으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또한 위 재단은 위 부지에 진입로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고도 사전에 청소년수련원 건립 관련 인허가절차 및 진입로 개설 가능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진입로 미확보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부지매입일(2007. 9. 5.)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착공(2009. 6. 30. 착공신고)하지 못하여 2008. 10. 6. 사업준비를 철저히 하여 부지를 선정하였더라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계 78,407,960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위 재단은 진입로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2009.

6. 8.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의 요청에 따라 재단 소유의 연못부지(897 m², 임야, 농림지역)와 □□□ 소유의 토지(전 275m²)를 교환한 후 2011년 11월 말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이나 위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내에 위치하여 수련원 시설부지나 도로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이 전체 이용자 10,223명 중 순수 청소년 이용자는 1,144명(11%)에 불과하고 이중 청소년단체 이용 횟수가 총 8회(19일간 총 568명)이며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이용횟수도 6회(15일)에 그치고 있음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청소년지도사(2명) 및 영양사 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데 따른 용역비 등의 부담으로 [표 2]와 같이 2011년 10월 말 현재기준으로 10개월간 총 2억 2,700여만 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하였다.

[표1] 청소년수련원 이용현황(2010년 10월 ~ 2011년 10월 말)

(단위 : 명)

구 분	대학생	교직원	동문	일반	청소년	총계
이용자 수	4,423	1,412	1,471	1,773	1,144	10,223
이용률	43.3%	13.8%	14.4%	17.3%	11.2%	1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표 2] 청소년수련원 수입·지출 현황(2011년 10월말)

(단위: 원)

수 입	객실	식당	시설사용	매점수입	기타	소계
	80,480,263	43,777,000	13,088,000	5,023,872	57,640,000	200,009,135
지 출	사무관리비	시설관리비	시설설치사업비	용역비	인건비	소계
	190,362,618	23,371,400	24,886,000	135,000,000	54,320,000	427,940,018
운영수지 ('11. 10. 31. 기준)	수입합계		지출합계		총계	
	200,009,135		427,940,018		△227,930,883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앞으로 재단의 기금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법령위반 또는 기금손실을 초래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 사 원

주의요구 · 통보

제 목 산학협력단의 연구 간접비 관리업무 불철저
소 관 청 서울특별시
관 계 기 관 서울시립대학교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에서 2004. 4. 1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설립한 뒤 위 대학교의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비 중앙집중관리 제도개선”(2005. 9. 8.)에 따라 2006. 1. 1.부터 산학협력단과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각각 관리해오던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에서 집중관리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연구 간접비’는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와 연구비 중에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를 말하며, 연구비 및 연구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되 연구비 사용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대학교에서는 연구비 중앙집중관리제를 시행(2006. 1. 1.)하기 이전부터 부설연구소에서 관리해오던 연구 간접비에 대해서도 이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이관³⁾하도록 하여 연구 간접비 관리 및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어

3)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행한 「산학협력단 운영 매뉴얼」(2009. 1월) 113쪽 질의 7에 대한 답변에서 산학협력 계약과 관련되는 재원이 산학협력단 설립 이후에도 교비회계에서 관리되고 있다면, 조속히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야 했다.

그런데 2011년 10월 감사원에서 위 대학교 부설연구소의 자금관리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연구원 등 4개 부설연구소⁴⁾에서 2006. 1. 1. 이전에 계약 체결된 연구사업과 관련되거나 기존에 보유·관리해오고 있던 연구 간접비 총 13억 2천여만 원(2011년 10월 기준)을 위 산학협력단에 이관하지 아니한 채 부설 연구소 명의로 된 48개의 계좌에 별도로 관리해오고 있었고, 위 산학협력단은 매년 부설연구소에서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검토해오면서 결산내역 확인을 통해 위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관요구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연구원(전 원장 ○○○○ 교수)에서는 2007. 5. 30. 내부회의를 개최하여 보유하고 있던 연구 간접비 총 1,259,679,991원을 증권회사에 위탁·관리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해 9월 ●●증권에 보유 간접비 전액을 위탁하였다가 2009년 10월 인출금액을 기준으로 총 68,596,601원의 손실을 입는 등 부설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 간접비 총 13억 2천여만 원이 산학협력단의 관리를 받지 않은 채 회계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은

[통보] 부설연구소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연구 간접비를 산학협력단 회계로 이관·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의] 앞으로 학술연구비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과학연원, 산업경영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및 정보기술연구소